

인권정보자료실  
R1.1.1

# 인권학술소식

합본1호  
(1호~100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학술소식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운동사랑방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1. 대책없는 폐업조치에 3천여 원진 가족 굽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원진 노동자 폐업투쟁 1백 20일째, 평동성당 철야투쟁 20일째이다. 지난 6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폐업조치 이후 비대위는 6월 11일 원진폐업 주동자 민자당 강삼재 정책실장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 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굽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2.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을 즉각 해결하라.

원진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 이 아니다. 친일파 박홍식, 3공의 박정희 친인척 정영삼(현 한국민속촌 회장), 5공 전창록(전 공군소장), 6공 백영기(전 육군소장)등 군사독재와 유착된 이들이 30년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환자를 은폐하고 방치해서 결국은 세계제일의 직업병을 양산해왔다.

어두운 시대의 참혹한 과거는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유물인 원진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30년간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현재 3백명이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진진, 치료, 보상 등 종합적인 직업병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8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공장폐쇄 결정을 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으므로 확실한 재취업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원진 노동자의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문제는 병들고 굽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3.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법정 관리인인 산업은행 쪽이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산조치를 강행하겠다는 행위에 대해 정상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영삼 문민정부라면 과거 30년간 독재정권시절의 유물인 대책없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전강과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취업대책을 마련해 8백명의 원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생존권 보호는 해야한다.

우리는 찬이슬 내리는 평동성당 앞

길거리에서 라면, 국수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3천여명 원진가족이 굽어죽을 위기에 놓여있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백 20일, 그리고 최근 평동성당 철야농성 투쟁으로 20일 동안을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오늘 평동성당을 시발점으로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 방문’ 투쟁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힘을 총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을 보장하라

-원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원진 노동자도 주석명절 고향에 가고 싶다. 생계비를 지급하라

1993. 9. 25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가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 검사님께서 조사중인 김삼석씨의 아내되는 사람 윤미향입니다.

김삼석씨는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날로부터 23일까지 조사를 받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조사받는 기간중 자해를 행해 몸 상태가 아주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심신은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안기부에서 만나뵌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해로 인해 다친 꼬리뼈는 오래 앓아 있으면 안되며, 한번 구부러진 꼬리뼈는 앞으로도 계속 재발한다고 합니다. 부인인 저로서는 심신이 약해진 가운데서 또다시 지난번 안기부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려가지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님 재량에 따라 가족면회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후 거의 10여일이 지난 후인 10월 2일이나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온통 김삼석씨의 전강에 대한 적정으로 마음 풀이고 있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가족으로서 빠른 시일안에 김삼석씨를 면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알맞은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27일

김삼석의 처 윤 미 향

# 인권하루소식

## 93년 10월

(제17호 - 제36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 직접증거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 중에 가혹행위를 당한 김학동(45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의 지시에 따른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한 후 자백을 강요하면서 검사실 옆방에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직접증거없이 당사자 및 주위의 증언만으로 검찰에서의 가혹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김씨를 조사하는 30여시간 동안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와 수사관 8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 세계일보

####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인권 내가지키자-

세계일보는 10월 4일부터 '내인권 내가 지키자'는 제목의 연재기사를 실기 시작했다. 총 10여회 정도에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채 체포되거나 연행당한 뒤 불법감금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국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김성재(한신대  
교수) 위원장이 지난 9월 30  
일 영국으로 출국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예정으로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에 정진할 계획이다.

### ■ 공판안내 ■

·10월 5일(화)  
박철언, 특가법, 2시,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  
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특가법

·10월 8일(금)  
박석진, 군무이탈, 4시,  
수원지법 / 황경로의 1  
인, 특가법, 10시, 311호,  
선고

·10월 11일(월)  
황석영, 국보법, 10시,  
311호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합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 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 인권하루소식 창간호-제14호 총목차, 9월 7일-9월 28일)

### 창간호(9월 7일, 화)

- 1면 :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인권하루소식' 창간사  
 2면 : ·'문민적' 시대에 인권파수꾼-'인권하루소식' 창간 / 400여 독자에게 배달  
 ·수배해제 촉구대회-오늘 연세대 광장에서  
 ·이문옥 감사관 무죄판결-양신선언자 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연극 「완전한 만남」공연-학전소극장/9월 7일-22일 공판안내  
 3·4면 : ·창간격려문  
 5·6면 :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총목차(준비 1호-24호, 8월 4일-9월 4일)

### 제2호(9월 8일, 수)

- 1면 :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7일 연세대 민주광장, 수배해제 촉구대회 500여명 참가  
 ·2년 구형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법원, 김국혜씨 폭행범 준로자 공판재개하기로  
 2면 :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8월 25일, 강남길 교수 4등 학계 중심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9월 7일, 6공 정치 수배 해제 촉구대회 성명)  
 ·안내(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 '윤금이 공대위 활동평가회')

### 제3호(9월 9일, 목)

- 1면 :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 전신 85% 3도 화상 위독  
 ·김삼석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 당해-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검찰, 안기부 직원 중인 신청 -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  
 2면 :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재판부, 김국혜씨 증언듣기로  
 ·정대협, 사회당 위원장에게 '진상규명' 노력요구 국민 여러분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이경동씨 유서

### 제4호(9월 10일, 금)

- 1면 :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불법연행 횡행-8일 김삼석씨 남매 연행, 10일 오전 2시 현재 소재파악도 안 돼  
 ·분신한 광주교대 이경동씨 끝내 사망-9일 아침 전남대 병원에서, 13일 장례식  
 ·'인권하루소식' 창간 격려문(추가문)  
 ·알림-조국교수·황주석씨 첫공판, '봉천동 만남의 집' 전화번호 변경  
 2면 :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결실하다"-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성명서)

### 제5호(9월 11일, 토)

- 1면 :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김 삼석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안재우기·가혹수사 여전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황주석·조국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이종수 첫 공판에서  
 ·고 이경동씨 「민주국민장」  
 ·서울변협 당직실 전화번호 안내  
 2면 :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하는가,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남한사회주의 과학원' 관련 구속자 일동)

### 제6호(9월 14일, 화)

- 1면 : ·'원진 특별법' 제정 강력요구-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11일, 전해투 대회에서  
 ·단체동정-유가협·유가협 후원회 총회, 민가협 「민주가족」회의 「양심수 후원회」 산행  
 2면 :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공판안내

### 제7호(9월 15일, 수)

- 1면 : ·노태훈씨 즉각 석방 요구-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원진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정대협 '수요시위'  
 2면 : ·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일본 정계 법조계·학계 등에서 노태훈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 당국에 낸 성명  
 ·정치수배자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정치수배자들의 친구·선후배

### 제8호(9월 16일, 목)

- 1면 :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민정련 용인지부장 경찰에 연행-소재파악 안돼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 시민한마당-26일 서울대에서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월례회의, 박선영열사 추모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안내  
 2면 : ·5·6공화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제9호(9월 17일, 금)

- 1면 : ·폭행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평군 장애인 폭행사건」, 수사의 공정성 의문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해고노동자 부모, 아들 복

### 직안되자 자살

- 명동성당 농성, 원진레이온 속보  
 2면 : ·김삼석씨 남매 사건 설명회-연락모임 가지기로  
 ·민정련 지부장 양춘모씨-16일 오후 석방  
 ·노태훈씨 공판 연기·윤금이씨 살해혐의 마를 일병 항소심 안내  
 ·15일 사망한 배일도 지하철 노조 초대위원장 배상봉씨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

### 제10호(9월 18일, 토)

- 1면 :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엠네스티,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안기부, 김삼석씨 부인의 남편 구원활동 위협  
 ·여성운동의 장충동 시대 개막-17일,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  
 ·대구·경북 총학생회 연합의장 권혁명씨 불집혀-「한총련 전화회담」 관련  
 ·월간인권 9월호 발행-한교협인권위  
 2면 : ·국제 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 사건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공문

### 제11호(9월 21일, 화)

- 1면 : ·'의문사·고문등 과거청산 주력'-유가협, 18일 8차 정기총회, 회장단 개편, 명칭도 바꿔  
 ·'창살없는 감옥생활'-6공 정치수배해제 촉구·20일, 불교인권위, 8일 한교협 인권위  
 ·'원진직업병' 화형식-원진특별법 제정 요구대회에서  
 ·교도소 곳곳에서 육중투쟁-공주, 홍성, 춘천교도소 등  
 ·방북(시도)인사 국보법공판-황석영, 박동수씨 등  
 2면 : ·박동수씨의 최후진술증 방북추진 동기  
 ·공판안내

### 제12호(9월 22일, 수)

- 1면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한·일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21일(수)부터 사흘동안  
 ·안내-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환영법회,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방문,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증 조기 교육부분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워크샵  
 2면 :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첫날 발표문 중 한국 관련부분  
 ·바로잡습니다

### 제13호(9월 23일, 목)

- 1면 :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씨 자해로 고발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청와대 뒤 인왕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한·일 연대회의 이틀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양심선언 군경 중 첫 집유  
 2면 : ·민가협 매주 목요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시민인권상 시상식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14호(9월 24일, 금)

- 1면 : ·검찰, '파이프암' 수사기록 '분실'-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정경씨 유족 손해배상 청구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2면에 계속)  
 2면 :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제도 철폐도 요구  
 ·신내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제15호(9월 25일, 토)

- 1면 : ·안기부, 김삼석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 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검찰의 공정한 수사여부에 관심 집중  
 ·엠네스티, 김삼석씨 남매-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알림-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방문, 어머니,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공연, 배병성, 조국·황주석씨 공판, 김경순, 윤금이 살해혐의자 공판  
 2면 : ·안기부 발표중 김삼석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국제 애네스티의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2차 긴급구명활동 공문

### 제16호(9월 28일, 화)

- 1면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지요구 잇따라-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8명 18일째 단식농성도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25일 명동성당 집회에서  
 ·검찰, 김삼석씨 송치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공판안내  
 ·'인권하루소식' 휴간공고  
 2면 :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성명서)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가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

### ■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은 현재 인권단체 30여곳, 각 민주단체 50여곳, 연구자 및 개인 20여곳, 언론기관 40여곳, 정부기관 7곳, 종교기관 10여곳, 변호사 100여곳, 국회의원 100여곳, 정당기관 10여곳, 해외 10곳 등 400군데가 넘는 곳에 아침마다 팩스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귀 단체·귀하가 알고 있는 인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좋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세요.

인권운동 사랑방 전화 : 766-1163, 742-2769 팩스 : 745-9712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단식중인 노동자 2명 병원 후송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민주당사 단식 26일째

### 의사만류에도 단식 계속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중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2명이 5일 낮 12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황철이(27세), 황용범(28세)씨는 단식 25일째인 이날 낮 12시 30분경 다리 전체가 마비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40까지 떨어지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지난 달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서 삽발·단식을 시작,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계획한 이들은 그동안 2-3일에 한번씩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다 지난 2일 의사가 단식을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으

나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단식을 계속해왔다.

현재 민주당사에서 농성 중인 전해투 수배·해고자 중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는 91년 해고된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8명, 89년 해고된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2명 등 10명으로 모두 수배중이다.

### '병역특례' 노조탄압 수단

'병역특례 노동자' 문제는 6공화국 당시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는 89년 6월 대우정밀 노동조합 측이 129일 간에 걸친 파업 끝에 '직장·조장 직

선택'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자 회사측에서 노조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병역특례자 7명을 해고, 바로 영장을 발부하게 한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조측에서 '직장·조장·직선택'을 포기하여 임영명장이 철회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노동자 쓰러질때까지 아무런 일도 못한 정부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위원장 조준호, 36세 기아자동차 해고)-는 5일 '단식 26일째를 맞는 단식 농성자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더 이상 단식이 계속될 경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합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하는 인권소식을 받아 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 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른다'고 우려하고, '김영삼 정부가 지난 3월 10일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해고자들이 복직을 외치다 쓰러져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있지 않은' 데서 정부의 해고 노동자 복직의 지가 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전해투 9일 해고자 대회 한편 전해투는 9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지하철 초대 노조위원장인 배일도씨의 아버지 배상봉씨의 진혼제에 이어 '제5차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를 열어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동완 목사)는 이에 앞선 8일 저녁 해고자들이 농성중인 민주당사에서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가지고 일천인 서명운동 등의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갖고 8일부터 농성에 참가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해고 단식 노동자 대우정밀:박정수, 신이철, 문성철, 이철수, 조수원, 염성훈, 황철이, 황용범 풍산금속:허태구, 김성철

###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5일 불교인권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불법수사, 강제 연행 등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지난 날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

4일 KNCC인권위원장 취임 서울대성당 주임사제인 김재열 신부가 한교협인권위 신임위원장으로 10월 4일 취임했다.

김재열 신임위원장은 4일 취임인사에서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개폐와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권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 해고 노동자 등

의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인사 2면, 발췌)

김 신임위원장은 김찬국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중인 국회를 방문,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원진레이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원진특별법」 입법운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원진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 일대일 압력행사

는 원진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원진특별법」의 제정등 원진문제의 해결은 산업은행의 손에서 해결될 수 없고 정치적인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

1. (생략) 신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한 부분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청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권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이제는 인권운동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상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인권상황 개선을 멀다는 것 이 현실적 판단이다.

1) 우선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을 보면 9월 20일 현재 정치범수가 359명에 이른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두차례의 사면과 석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치 이제는 정치범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른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서 구속된 정치범수만도 69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이해해 우리의 인권상황 인식이 옳지 못함을 잘 알려주고 있다.

2) 아직도 300명이 넘는 수배자들이 끊기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새정부의 민주화 개혁의 정도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이미 법적조치까지 끝난 사안에 관련되어 아직도 수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수배자들은 그 수배에서 해제되어 새로운 사회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인권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복직, 보상,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해고된 노동자, 이전의 정권하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숫자가 5천여명에 이르지만 새정부는 이를 무조건 직장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민주화된 정부는 아닌 것 같다. 전교조의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의 정치상황에서 왜곡되었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서 야기되었던 만큼, 전교조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복직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복직 우선처리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전교조 교사들이 모든 것을 걸고 벌려온 '참교육'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범이나 해고자들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구시대의 비민주적 악법과 제도들이 전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인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반기운 소식은 지난 달 28일자로 신문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배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권운동을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사업을 하고 인권에 관한 신앙화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인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인권침해의 가능성 있는 법규의 개폐운동, 구조적인 개선 관행의 폐지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 4. (생략)

### ■ 각 단체의 광고를 받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 단체의 회보 등이 발간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주면 「인권하루소식」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은 현재 인권단체 30여곳, 각 민주단체 50여곳, 연구자 및 개인 20여곳, 언론기관 40여곳, 정부기관 7곳, 종교기관 10여곳, 변호사 100여곳, 국회의원 100여곳, 정당기관 10여곳, 해외 10여곳 등 400군데가 넘는 곳에 아침마다 팩스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케 단체·케하가 알고 있는 인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좋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인권운동 사랑방 전화 : 766-1163, 742-2769 팩스 : 745-9712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씨에게 2년 구형

김영삼 정부 출범후 최초로 열린 이적표현물 재판(재판장 안경진 판사, 검사 함귀용, 변호인 천정배·조용환)에서 노태훈(30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 대을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는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훈씨에 대한 첫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적화노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채 조국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노태훈씨가 소지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책’이라고 주장했다.

편법구속 성격 짚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씨는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짚어맞출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씨는 인권활동가로서 본단의 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연구용으로 ‘빼앗긴 세월’을 소지한 것이라고 소지 이유를 밝혔다.

‘인권활동 방해의도’ 변호인은 이어 상식적으로

로 납득할 수 없는 ‘빼앗긴 세월’을 국가보안법 제7조 1·5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한 것은 인권활동을 하는 노태훈씨 개인과 국내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린 노태훈씨 결심공판은 가족친지, 노태훈씨가 있는 민족건강회 회원, 민가협 회원등 60여 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열렸다.

검찰, ‘변호인 점검내용 보고받는 듯’

함귀용 검사는 변호인이 피고인과 점검을 통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백하지 마라는 말을 한적이 있지 않느냐’고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는데, 변호인은 그런 말을 한적도 없거나와 설사

했다하더라도 검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점검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자 검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92년 장기수들의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1호를 제작한 ‘민가협’,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한교협 인권위’, ‘천주교 인권위’,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재판부에 ‘빼앗긴 세월’ 1호의 제작 경위와 이 책자에 이적성이 없음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선고공판은 10월 20일(수) 오후 2시 425호 법정

**북한방문지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상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등은 노동절을 맞아 남·북한 노동자들이 통일 운동에 적극 나설 방안을 찾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북측대표 등과 만나 북한 방문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어 지난 5월 귀국하여 6월에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세요.

##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합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 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또 탈진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10월 7일로 단식농성 27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의 대우정밀, 풍산금속 박정수씨를 비롯한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명중 황철이(27세)씨등 2명이 합류하여 10명이었으나 5일 2명이 후송되어 병원으로 후송된데 이어 6일에도 신이철(27세)씨가 생겨 현재는 7명이 단식농성중이다.

신씨는 6일 아침 기력이 쇠퇴하여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으켜 세웠으나 곧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후송을 거부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초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8명이 지난

### ■공판안내■

·10월 8일(목)

10. 김영미, 국보법, 421호, 선고 / 11:30, 이건개, 특가법, 319호, 5회 / 14, 김문찬, 특경법, 319호, 3회 / 14, 정덕진, 특가법, 311호, 6회

·10월 9일(금)

10. 박형순, 국보법, 321호, 선고 / 10, 조국·황주석의 5인, 국보법, 311호, 3회 / 10, 한재희의 4인, 업무방해, 321호, 선고 / 10, 주영빈, 뇌물수수, 418호 / 10, 윤영조의 3인, 업무방해, 321호, 선고 / 10, 황경로의 5인, 특가법, 423호, 6회 / 10, 유상부, 특가법, 423호, 6회 / 14, 배종렬의 12인, 특경법, 417호, 5회

### ■민가협, 오늘 목요시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앞에서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갖는다.

민가협에서 지난 달 23일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이어 두번 째로 벌이는 목요시위는 아직도 양심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민가협은 매주마다 주제를 달리해 노래공연, 전시회등의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할 예정이다.

연락처 : 전화 763-2606 / 팩스 745-5604

하는 기자회견을 8일 오후 2시 ‘전해루’ 농성장인 민주당사에서 갖고 해고 노

동자의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민주당사 농성에 합류할 방침이다.

##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해

6일 지난 5월 29일 호프집 주인을 폭행해 폭력행위등 법률에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존 로저 병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끝내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폭력행위’로만 구형을 하였다.

존 로저 병장은 한미행정 협정 본문 22조 5항에 따라 미군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이 구형된 존 로저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끝내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폭력행위’로만 구형을 하였다.

회에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씨연행 ‘자민통’ 사건 관련으로 90년 수배된 김석(29세, 고려대 법대)씨가 6일 오후 4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연행되었다.

‘자민통’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이미 불잡혀 형을 살고 나와 지난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 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국

인권운동 사랑방  
세 전화번호  
742-2769

### ■회보 및 자료집 소개■

\*베를 제73호 발간(한국여성의 전화 회보)

-연락처 : 전화 269-2962/4, 팩스 269-2966

-주요내용 : 아시아 여성인권회의 참관기/이혼에 대한 통념(특집)/상담통계/종합유선방송의 여성체널/금융실명제와 뒷주머니

\*장애인 생활실태 및 배우자 의식조사(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발행)

-연락처 : 전화 796-4280, 팩스 796-4281  
37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를 첨가,장애인 가구 실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 : 조사목적·방법/배우자의 복지제도 욕구 실태, 가구의 주 소득원등 조사결과 요약/장애인 관련 제도의 시급한 과제,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등 조사결과 및 분석/생활환경 개선, 장애인 가구소득보장 대책 등 조사의 결과 및 정책제언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 김삼석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옥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책임자 등이 성기를 치술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을려는 통

에 김삼석씨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무인을 찍히고 말았다고 한다.

김삼석씨, 강압수사 항의하기 위해 자해 한편 지난 93년 9월 20일(월) 안기부에서 김삼석씨가 변호인 접견도중 '허위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뒤 갑자기 벽에 머리를 세차게 들이박고는 쓰러졌다.

김삼석씨는 안기부에서 겸찰로 송치되기 전날까지 성고문을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도 못하는 국도의 절망감에서 위와 같은 자살기도를 한 것이었다고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혔다.

이런 성고문 등의 가혹행

위를 폭로하기 위해 자해 행위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안기부 지하조사실이었다'고 하며, '안기부 수사관 15명이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기부, 상습적인 성고문 이번 안기부의 성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92년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로 재판을 받았던 양홍관(34세)씨가 재판정에서

안기부 수사관 폐지' 주장 또 '민가협'은 '밀실고문'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안기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인권유린을 막는 지름길이지만 우선 안기부법 개정에서 수사관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홍관씨는 지난 해 8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다가 연행된지 나흘째된 날은 발가벗겨 놓고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구타당하고 일면 '귀

두차기'라는 성고문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 사면위원회는 9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삼석씨와 김은주씨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더 이상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 법무부, 안기부에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민가협'은 7일 '이른바 문민시대에 반인륜적, 반도덕적인 성적희롱과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하며 '성적희롱과 고문을 자행한 안기부 수사관들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연행·불법 고문수사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 김삼석씨 구속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수사관 처벌 안기부 수사관 폐지' 주장 또 '민가협'은 '밀실고문'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안기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인권유린을 막는 지름길이지만 우선 안기부법 개정에서 수사관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시위 '민가협'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지난 달 23일 시작한 목요시위는 7일 탑골공원에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목요시위에서는 김선명씨의 그림, 양심수의 사진 등과 석방요구 피켓을 들고나와 시민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알렸다.' 92년 8월 25일 김낙중씨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 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 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서준식

### 심금섭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92년 8월 25일 김낙중씨 사건과 관련, 15년 형을 받고 복역중인 심금섭(63세)씨의 부인 김복희(56세)

씨가 지난 5일 새벽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쓰러진 뒤 부천성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훌로 내려와 지내다 91년 4월 태국에서 북한에 있는 형을 만나고 돌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 구속되었다. 연락처: 부천 성가병원 응급실(032-302-1400 심애니)

## 양심선언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전경 명예회복 요구  
이지문 중위 등 파면취소 탄원

의 부당성에 항거하여 양심 선언을 했던 만큼 이들에게 다시 전경대에 재복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임성호·이종수·강태중 일경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들에게 재복무명령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책위는 또 이미 상당한 실형을 산 박길남·윤석양·최홍기 이병 및 이광기 일병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해 3월 군부 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25, 당시 육군 9사단), 89년 1월 군 명예선언을 한 김종대(29, 당시 30사단 중위)씨 등은 6일 자신들에 대한 이동병 강등·파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단원서를 권영해 국방장관에게 각각 제출했다.

### 정대협 북한 접촉 승인 요청

### 전후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3인)는 7일 통일원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에 참가 허용을 공식 요청하였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에 참가한다.

### ■ 알림 ■

####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 개소식

-일 시 : 93년 10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 노동정책연구소 사무실  
-연락처 : 전화 749-6052/4

#### \*고 배상봉을 진흔제 및

#### 전국 제5차 해고 노동자 결의대회

-일 시 : 93년 10월 9일(토) 오후 3시  
-장 소 : 탑풀공원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지원대책위원회

이제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 유서사건 총자료집

전3권 2700쪽

제1권 : 수사자료(약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1000쪽)

구입문의 : 766-1163 / 3책 1절 10만원

### ■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은 현재 인권단체 30여곳, 각 민주단체 50여곳, 연구자 및 개인 20여곳, 언론기관 40여곳, 정부기관 7곳, 종교기관 10여곳, 변호사 100여곳, 국회의원 100여곳, 정당기관 10여곳, 해외 10곳 등 400군데가 넘는 곳에 이침마다 팩스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귀 단체·귀하가 알고 있는 인권에 관한 어떤 정보도 좋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인권운동 사랑방 전화 : 766-1163, 742-2769 팩스 : 745-9712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 발표

대우정밀동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여명의 단식 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이들이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해투 지원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공동 대표 문익환·박형규 등 10명, 집행위원장 김동완, 이하 전해투 지원대책위)는 8일 저녁 민주당사에서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해투 지원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8일 오후 문익환, 백기완, 이소선(전태일씨 어머니), 이효재(정대협 공동대표), 안옥희(민가협 상임의장) 씨 등이 사회 저명인사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문제는 5·6공군사정권의 탄압에 따른 노동자의 일방적 회생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복직과 원상회복 문제는 5·6공 비리척결의 주요한 내용이며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 민주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강기훈씨, 교도소에서 국경감사 증인으로 출두!**  
**이제 당신 스스로 '유서대필 사건'을 심판하십시오**  
4·6배판 / 전3권 / 총 2700쪽 / 풍부한 도판 / 사건기록 총망라

## 유서사건 총자료집

제1권 :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행한 모든 수사기록 기록! (약800쪽)  
제2권 : 치열한 법정공방 1·2·3심에서 나온 모든 기록! (약900쪽)  
제3권 : 풍부한 자료 모든 신문 스크랩·국과수 뇌물감정사건 기록! (약1000쪽)

구입문의 : 766-1163 / 3책 1질 10만원

한편 「한교협 인권위원회」

## 국제변호사 협회 노태훈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147개 변호사 협회의 연합체이고 250만이 넘는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톰슨 회장은 지난 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태훈씨의 석방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씨의 구속영장이 제9조 2항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노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상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한다고 단정한 혐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중 표현의 권리 보장을 하는 제19조와 영장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동생 김은주씨도 같은 기간에 지난 달 29일과 8일 김씨의 어머니와 윤씨가 면회를 했을 뿐이다.

## 김삼석씨, 검찰송치후 가족면회 단 한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씨 부인)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였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씨 부인)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였다.

윤미향씨는 8일 김은주씨는 윤미향씨와의 면회를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받을 당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은 물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부터 시국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가족면회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사실상 면회가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소홀히

##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황주석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황주석·조국(울산대 교수)씨 등 7명에 대한 「사회주의 학파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3회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장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회유로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고집하여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2일(금) 10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심금섭씨 구속집행정지 신청·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다.

가족들은 심씨의 부인 김복희씨가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증으로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게 되자 심씨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부인의 임종이라도 보게 하고자 지난 7일 오후 대법원에 8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변경 및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인 고 김복희씨는 남편을 끝내 만나지 못한채 같은 날 오후 5경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한때 심씨로 하여금 9일로 예정된 장례식에 참석토록 하기 위하여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을 것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심씨의 유일한 딸인 심애니씨는 7일 오후 대법원에 위 신청을 하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발인은 9일 10시 경기도 시흥 자택에서 하고 장지는 천주교 공원묘지이다.

연락처 : 032-695-3853

## ■ 알림 ■

- \*고 배상봉 응진흔제 및 제5차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
- 일시 : 93년 10월 9일(토) 오후 3시
- 장소 : 과고다공원
- 주최 :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 주관 :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 후원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 ■ 단체동정 ■

- \*천정연 장기수 후원회 정기산행
- 일시 : 93년 10월 10일(일) 10시
- 장소 : 강악산
- 연락처 : 전화 322-6075 팩스 322-1776

- \*주한미군 범죄 근절위한 상설기구 대표자회의
- 일시 : 93년 10월 11일(월)
- 장소 :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 연락처 : 전화 708-4181 팩스 708-4186

## ■ 공판안내 ■

- \*황석영 국가보안법 공판
- 일시 : 93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법정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유서대필사건'  
중요증인  
홍성은씨 기자회견

##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강기훈씨, 검찰 국감장 증언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법'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강기훈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작수사를 폭로하였다. (자세한 증인신문 내용은 추후 속기록이 입수되는 대로 개재할 예정).

장시간 불법조사, 밤샘조사로 정상적인 판단 못해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강수림 민주당의원 등이 진

**강기훈씨, 교도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  
이제 당신 스스로 '유서대필 사건'을 심판하십시오  
4·6배판/전3권/총 2700쪽/풍부한 도판/사건기록 총망라

### 유서사건 총자료집

- 제1권 :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행한 모든 수사기록! (약800쪽)
- 제2권 : 치열한 법정공방 1·2·3심에서 나온 모든 공판기록! (약900쪽)
- 제3권 : 풍부한 자료, 모든 신문 스크랩, 국과수 뇌물감정사건 기록! (약1000쪽)

구입문의 : 766-1163 / 3책 1질 10만원

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홍씨는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 중 하나로 자신의 수첩에 적혀 있던 김기설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강기훈이 썼을 것이라는 검찰의 필요한 추궁과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강신욱 검사의 무서운 협박성 발언에 심신이 몹시 피로했던 상태에서 인정"한 것을 들기도 하였다. 홍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시간은 6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60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적으로 조사되었다.

강기훈씨는 증인이 끝난 후 병을 앓아오다 오랜만에 외출을 한 아버지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하기도 하였다.

#### '강기훈 공대위' 논평 발표

한편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이날 국감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3면 참조)

논평에서 공대위는 "홍성은씨의 결단에 경의를 표시하며,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이날 검찰과 법사위 일부의원들이 보인 처사에 대하여 "'유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밝혔다.

사가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에 대비해 곳곳에서 지나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홍씨가 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였으나, 1시 50분경 공안부 검사가 민원실로 비까지 내려와 직원들에게 "오늘만은 민간인을 기자실에 절대로 들어보내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여 홍성은씨 등은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장은 일반인의 방청이 금지되었으며, 서울 지검장과 공안 2부장은 강기훈씨 부모에게만 국감장 옆방에서 스피커를 통해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옆방마저도 다른 방청인들은 통제하였다.

강기훈씨는 증인이 끝난 후 병을 앓아오다 오랜만에 외출을 한 아버지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하기도 하였다.

### 황석영씨 결심공판 합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합귀용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미화 25만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국 즉시 구속 기소됐다.

### 대법원, 김낙중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해가는 투쟁" 9월 5차 결의대회 열려

10월 12일 현재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 특례 해고노동자 10명등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지난 9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유상덕(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권영길(전국 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김동완(전해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탑골공원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해고노동자들은 '구속결단 선언문'을 통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방위산업체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연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은 5·6공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5·6공화국에서 피땀흘려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은 권리회복 차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도를 확보해가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대회후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까지 지난 3월

### ■ 주요 공판 안내 ■

- \*10월 13일(수)  
· 마광수, 함소심 4차, 10:30, 418호
- \*10월 15일(금)  
·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확인 것이 있습니다.

10일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해고자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규탄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음독자살한 배일도 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의 아버지 '배상봉씨 진혼제'가 김경란씨의 진혼총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열렸다.

### 홍성은씨

## 기자회견문 (전문)

### <1>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

세청 '유서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강기훈씨는 징역 3년형을 받고 지금도 대전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기훈씨를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이 사건의 수사·재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만을 생각하더라도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후로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충격속에서, 세상도 사람들도 다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삶속에 파묻혀버리고자 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언젠가 분명히 할 말을 하고 넘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 한구석에서 해왔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강기훈씨가 증인으로 나오고 다시 '유서대필 사건'이 거론됩니다. 검찰에도 법원에도 깊이 실망했던 저는 이 기회에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 앞에서 어찌면 평생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를 솔직한 저의 심정을 털어버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새롭게 저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와보면 말할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그동안 호소하고 싶었던 이 '유서대필 사건'의 문제점을 제가 직접 경험한 범위에서 공표하고자 합니다.

### <2> 제기하고 싶은 문제들

먼저 저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런 저에게 검찰에서의 계속되는 철야조사와 집요하게 말꼬리를 잡는 식의 조사는 몹시 힘겨운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일단 범인으로 찍어 놓은 강기훈씨를 확실하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집요한 안간힘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 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김기설 743.9127.8 #742.8289>은 누가 썼는가?

유서와 몹시 닮은 이 글씨에 관해 물론 저는 처음부터 김기설씨가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설씨가 썼다면 언제 어디서 썼느냐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 대답을 못했습니다.

강기훈씨가 썼을 것이라는 검찰의 집요한 추궁과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강신욱 검사의 무서운 협박성 발언에 심신이 몹시 피로했던 저는 결국 마지막 검찰조사에 무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심 재판 때 강기훈씨가 아니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신하건대 그것을 쓴 것은 절대로 강기훈씨가 아닙니다.

2) 참고인인 저에 대한 장시간 조사는 불법이었습니다.

1991년 5월 13일 오후 "잠깐 조사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며 수사관들이 처음으로 집으로 찾아온 이후 제가 검찰에서 조사 받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3일 오후 16시-같은 날 20시(4시간)

(압수수색할 것이 있다며 다시 잠깐 집으로 갔다가)

\*5월 13일 22시-5월 14일 20시(밤샘조사 포함 22시간)  
(카가하여 집에서 잠)

\*5월 15일 10시-5월 17일 24시(17일 저녁 증거보전절차 포함 60시간)

전기간을 통하여 밤과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낮에는 송명석 검사 사무실 쏘파에서 자는 생활은 저를 몹시 지치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3) 강압과 협박 그리고 소모

5월 15일에 다시 검찰청으로 연행된 후로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강압적이어서 많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끈질기게 말꼬리를 잡는 식의 조사에 심하게 지쳐 있었고, 17일 15시경 조사 마판에 이를 무렵 저의 수첩에 적힌 <김기설 743.9127.8 F>742.8289>를 누가 썼느냐에 대하여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강신욱 검사가 "더 조사해야 하는데 48시간이 지났으므로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의 말을 했을 때 저는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되어 검찰의 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잠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된 이유는, 몹시 지친 상태에서 검찰이 강기훈씨 필적도 아닌 혁노맹 문건(그것은 유서 필적과 비슷했다.)을 강기훈씨 필적이라며 자꾸 저에게 들이댄 까닭이었습니다.

4) 검찰조사 후의 '잠적'에 대하여

1991년 5월 17일 24시에 검찰청을 나서자 곧바로 성남 이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거기로 가라 하셔서 순순히 갔는데 송명석 검사가 기자나 전민련 사람들 이 찾아올 것을 우려해서 성남경찰서에 부탁하여 형사들로 하여금 이모님 댁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저는 거의 방안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이모님 댁 끝목 어귀에는 항상 차 한대와 경찰관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송명석 검사는 여러차례 찾아와 저를 차에 태워 야외로 데리고 나가 이것 저것 물었는데 주로 <김기설 743.9127.8 F>742.8289>를 쓴 사람에 대하여 조서내용을 확인하는 률음을 거듭했습니다.

5) 수첩변조에 관련된 저의 진술에 대하여

강기훈씨가 수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강기훈씨의 유죄를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김기설씨가 분신하기 전날인 5월 7일 밤, 김기설씨가 말긴 수첩을 다음날 12시경에 연세대학교에서 전민련 관계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있을 때 송명석 검사가 와서 그 수첩에 적힌 여러군데 글씨에 대

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무슨 색이었느냐?" "이 부분은 무슨 필기구였느냐?"는 질문을 한참동안 하면서 자신 없이 대답하는 저의 말을 조서로 작성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송명석 검사는 비로소 품에서 김기설씨 수첩을 꺼내어 보이면서 저의 진술 내용과 그 수첩에 적힌 필기구 종류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일치'를 두고 수첩이 그 사이에 조작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수사방식이 옳은 것입니까?

6) 항소심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 저는 항소심 때 변호인 즉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갈 예정이었던 전날 밤 21시경까지 외출했던 저를 송명석 검사가 여러차례 전화로 찾았다고 하고, 밤 22시경에 검찰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님과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다가 24시에 갔는데, 그 직후에 아버님과 저 사이에 (가정사이기에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 결국 법정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증인은 누구에게도 영향 받지 않고 법정에 나가 자유롭게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저의 경우 계속 검찰을 의식해야 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재판은 공정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강기훈씨는 다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진실이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1993년 10월 11일 홍성은

### 홍성은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우선 홍성은씨의 오늘 기자회견을 환영하고 홍성은씨의 결단에 경의를 보냄과 동시에 이제 그녀가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기훈씨의 증인 출두를 계기로 국감장에서 유서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이것을 부결시킨 법사위의 협량한 처사, 그리고 홍성은씨를 검찰기자실 출입마저 저지했던 검찰 당국의 출혈한 처사는 양식있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유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방증이다.

홍성은씨 증언으로 충격적으로 드러난 검찰의 과행수사는 강기훈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진정한 범인일 뿐 아니라 한 젊은 여성에게 재기하기 어려운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오늘 홍성은씨의 증언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국감, 홍성은씨 기자회견으로서 진실의 승리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인권하루소식

## 황석영씨 무기구형 항의 성명서 발표

민예총 등 '황석영씨 석방대책위'는 11일 항거용 검사가 황석영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후 이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2면 참조)

성명서에서 이들은 "항거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주장에 비애를 느낄 따름"이라면서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 엠네스티 정부에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10월 7일 「한국: 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고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2면 참조)

이 서한에서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애 이르는 혐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 알림 ■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창립총회가 지난 11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빌족식 오전(13일) 개최  
·장소: 향린교회  
·시간: 오전 11시-12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 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혐의로 이미 오랜 세월동안 복역해온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장기수인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격리 구금 및 고문을 당했으며, 국제 인권규준에 미달되는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법원은 이미 공개된 것일지라도 북한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하는 것 역시 간첩행위로 해석되곤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양심수의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의 본 보고서는 1975년에서 1993년 사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16명의 수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중에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 이들 정치범들이 체포 후 60일에 달하는 격리구금을 당하였고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들 자신 또한 타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자백에 주로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기 가석방되지 못한 수인들도 있다.

정치학도인 김성만과 황대권은 1985년 체포되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 모두 고문당한 사실을 주장하며, 간첩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은 현재 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이며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장기수로 지정되었다. 1993년 4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위원

회 역시 이 사건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그들의 구금은 한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법 규준에 의해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사업가인 함주명은 1983년 체포되어 60여일 이상 격리구금을 당하였다. 그 역시 고문을 당했으며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다. 또 다른 수인인 유정식 역시 1975년 무기형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중이다. 그 또한 고문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례들을 재검토하도록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

1993년, 1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나중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후 그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했다는 혐의만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욱 더 신장시키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장기 정치범의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자국내에 인권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세계에 입증시키려고 노력해 왔었다. 1993년 6월 외무부장관은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세계인권총회 참석에 즈음하여 저는 한국에서 인권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기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드디어 승리한 한 나라와 그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도 300명이 넘는 정치적 수인이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로 수감중인 80명 가량의 장기수인들이 있다. 관계당국은 정치적 수인의 불공정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를 시종일관 조사하지 않고 있다. 구금자들은 거듭 격리구금과 고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국가안보 법규를 적용받아 장기형이 선고될 위험에 놓여 있다.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학기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학기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를 무장된 그의 주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가 끝내는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작가 황석영의 통일운동·민족문화운동을 은갖 방법으로 편파·왜곡하면서 작가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를 훼손내기를 할버둥쳤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보여준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한 자체 반성 운운 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하등 다른 바 없는 검찰측은 고고한 구형량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그 우대함에 차라리 비애를 느낄 따름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가 황석영씨 구속사건은 이른바 군사정권인 노태우 치하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부와 검찰마저 작가가 귀국하기 직전인 지난 4월 20일, 시국사법에 대한 수배제 조치와 함께 작가 황석영씨의 귀국허용 방침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히면서(중앙일보 4월 20일 1면 톱, 동아일보 4월 21일 1면 톱 기사) 그가 자진출두할 경우 정부의 3·6사면 조치에 걸맞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1심 구형량은 정부와 검찰의 바로 그러한 대국민 약속을 깡그리 저버렸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 생략>

1993. 10. 11.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위원장 신경림/염무웅/강연균/김원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는 1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탄원서에서 인권위는 홍성은씨가 검찰의 협박 등으로 공정한 수사와 을 바른 증언을 하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문국진씨 고통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

80년 이후 10여년을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며 살아온 문국진씨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하려는 모임이 13일 향린교회에서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익환 목사, 이소선 여사, 김근태씨 등 재야인사와 연대 동문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발족취지문에서 "문씨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으로 이 모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야만적인 고문이 더 이상 이 땅에 벌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김근태씨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8년전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던 당시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면서 "고문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장악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도 고문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을 대표해서 문씨의 부인인 윤연옥씨는 인사말을 통해 "소송제기를 하는 지금 오히려 착잡하다"며 "지난 6년 동안은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상처

받은 문씨를 끝까지 지켜내고,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백승현 변호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문피해 소송의 소장 내용이 발표되었다. (2면 참조)

이날 발족한 '문국진씨와 함께하는 모임'은 86년 고문으로 회생된 박종철씨 아버지 박정기씨가 대표를 맡았고, 부대표로는 인재근(서울민주시민연합 상임부의장)·서준식(전국연합 인권위원회)씨 등이 맡았다.

이 '모임'은 앞으로 문씨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과 소송의 승리를 위한 지원사업, 고문피해자와 후유증에 대한 조사사업, 고문신고상담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해고노동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 18일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

12일 오후 1시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해고 노동자 21명이 종로 3가에 있는 서울지방 노동청에 들어가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노동부 장관과 15, 18 양일중에 면담을 하기로 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전해투 집행위원장 강중철(31세, 창원 코리아 타코마 해고자)씨 등 21명은 '농성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정부출연기관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해고자의 복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해제 및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이창복 전국연합 상

양심선언 전경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경찰청 앞 항의방문

·일시 : 14일 오전 10-12시

·장소 : 경찰청 앞 (서대문)

·주최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766-4979)

·민기협·유기협 기금마련 장터

·일시 : 10월 12-14일

·장소 : 서울대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인권운동단체 활동자를 위한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 소장

원고 문국진 <주소 등 생략>  
피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두희

## 손해배상 청구의소(기)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전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함.

## 청구원인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자수후 청량리경찰서 대공파에서 경사 김낙현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원고를 3일동안 잠을 제우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사건으로 수배된 배원당의 행방 등을 관해 집요한 질문을 하였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며 쥐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3일동안 부모 등 외부와의 면회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 폐쇄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없이 국도의 공포감 속에서 쥐조를 당하였고, 3일이 지나 부모와 처음 면회를 했을 당시 부모가 사건 통닭을 보고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 사왔느냐"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 당시 경찰은 부모와의 면회를 불허하다가 당일 사람이 이상하니 보러오라고 하여 처음 면회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와 같이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 원고는 유치장안에서도 자신의 오줌을 먹는등 정신분열증세가 악화되어 경찰은 오히려 일부러 미친 적힌다 하여 구둣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라. 결국 구속 만기가 되자 경찰은 원고를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원고는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켜 결국 구치소내 정신병자 수용방으로 옮겨져 수용되었다가 다시 징

역방, 독방으로 전전 수용되었으나 계속해서 그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마. 이 사이 원고의 부모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문적 치료를 호소했으나, 위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송치 후 20일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이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원고를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병원으로 보내 입원케 했으며,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바. 원고는 그후 계속해서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증세는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Diagnosis: Psychogenic Paranoia Psychosis)으로 국제질병 분류기호 298.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위 분류 298.3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는 특히 수갑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이며 298.4는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다"입니다).

사. 결국 피고는 고문을 행하고, 그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원고를 전혀 구호치 아니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위 고문행위와 발병 후 구호의 무불이행으로 인해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해오며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항후에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이 명백한 바, 이 모든 손해를 금전적으로 모두 산정할 수 없을 것이나 금 10억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청구하지 기재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증방법

1. 진단서 1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 1. 위 입증방법 1통  
1. 위임장 1통 / 1. 남부서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든명  
백승현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lt;소견서&gt;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600316-1036211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 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적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책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이 있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갑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라된 급성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엔마트 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 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1993년 9월 13일 /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 동교신경정신과 의원 (333-3572)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지는 풀려날 것이라고 믿으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하여 매우 새로운 주제로 목요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0월 21일 목요집회는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5공 조작사건 양심수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집회'를 열 예정이다.

## ■ 알림 ■

□ 해고노동자 33일째 단식 중, 7명 사당의원 입원

· 명단 : 신이철, 황철이, 염성호, 문성철, 조수원, 허태구, 이철수

연락처 : 전해투(711-5423)

사당의원(509-5212)

□ 출소장기수 집 마련을 위한 이틀주점

· 일시 : 10월 16(토)-17일(일)

· 장소 : 명동 한화들 땅 (778-5639)

· 회비 : 만원

· 주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장기수족후원회(322-6075)

##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766-4979)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양심선언 전경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대책위원회 원과 집행유예로 출소한 입성호 일경을 포함한 양심선언 전경 등 2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양심선언 전경들은 "문민정부가 마치 선처나 하는 것처럼 집행유예로 내보내고 있다"며 "재복무를 강용하는 것은 양심선언자들을 단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양심선언 전경들이 꺼이지 않는 신념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전경대 해체를 주장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양심선언자들의 꾸짓물을 설명하면서 "농성 58일 동안 한치의 물러섬 없는 애국과 매국의 투쟁속에서 김영삼 정부도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과 명예제대는 못할 망정 재복무를 강요하는 현실은 이들의 양심과 의지를 꺼고자 하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현정부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갖게 된 것은 "양심선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

하나 지난 7월 21일 58일 간의 농성을 마치고 전경 해체와 군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면담에 나서다 연행된 8명에게 재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코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5공시절에 길게는 4년 6개월부터 짧게는 1년 가까이 수배생활

캐나다 인권단체 ICHRDD 대표, KONUCH 대표단 만날 예정

캐나다의 인권단체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ICHRDD: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의 대표인 Edward Broadbent와 이 단체의 Asia and Africa Programmes의 책임자인 Iris Almeda가 14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ICHRDD 소개는 2면 참조)

이들은 16일 오후 1시에 성공회에서 '유엔세계인권 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 대책위원회(KONUCH)', 대표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청취하고 아시아에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률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인권운동단체 활동자를 위한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단체탐방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그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 그 렇다, 여기는 최전방, 철새없이 우람한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골목, 구불구불,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렵다.

잠입하듯 조용히 들어서니 근무 중 이상무!

“시간의 조직화, 연구작업의 생활화, 근무중 절대금연”이라 써붙인 생활수칙대로 근무자의 책상위엔 자료와 노트가 성실히 펼쳐져 있고 흡연 욕구를 저지하기 위함인지 사탕이 가득 쌓여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판방청때문에 외출중이다. 오늘은 박석진 일경의 구형공판이 있는 날이다. 박석진 일경은 강경대 열사의 타살 이후 뜨거웠던 91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의 날에 전경·백골단 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했었다. 기독교회관에서 농성하다 지난 7월 21일 연행된 사람중의 하나이다. 훗로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무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문민정부의 대응양식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전경들에 대한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은 문민정부에 들어서서도 요청하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8명이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 농성을 하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위한 가두행진중에 전원 연행된 것이 지난 7월 21일이다.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8월 9일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가 공식발족을 하게 되었다. 회원은 가족과 출소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실무자는 9명이다. 하루씩 당면제로 근무를 하지만 저녁에는 다같이 모여 일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주로 해온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대외적으로는 양심선언자의 무죄석방과 정당성, 군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선전하는 것과 정부 주무부처의 항의면담투쟁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구속자의 뒷바라지와 재판과 관련된 일들이다.

지금의 조직역학상 한계는 많지만 ‘지원대책위’가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기만 하다.

첫째, 연대사업의 강화이다. 군민주화 운동이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회운동과 결합될 때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와 군민주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군을 민주화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결합하고 있으며, 조직역량에 맞게 연대의 틀을 넓혀나가는 가운데 “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사업도 고민중에 있다.

둘째, 전반적인 군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양심선언을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근본적인 군민주화와 병사의 권리문제와 맥을 이루는 문제이다.

현재 군대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사와의 접촉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를 합법화시키고 문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무사는 녹화사업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이전의 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많다.

6 공화국 하에 서 구속된 군인·전경 양심 수가 178명이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조직사건이

30여개, 그중 군대내 조직 사건이 6개이다.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달미암아 병사들은 부당한 재판과 과도한 형량에 직면해 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흔히 들 한다. 그러나 그 ‘좋아진 군대’에서 병사들은 구타, 수

치감, 의문사등에서 자유로운가 반문해 본다.

끝으로 양심선언 군경의 현재를 물어보았다.

양심선언 후 구속되어 형량을 다 살고 나온 소위 양심선언군경 1세대는 7~8년만에 학교와 사회로 복귀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2세대는 구속·재판·징역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형을 살고 나온 이후 ‘군대재복무’라는 어처구니없는 철퇴를 맞는 것이다.

전경복무를 ‘국방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선언한 이들에게 다시 전경복무를 시키는 현실을 이들은 ‘문민정부’의 군민주화 의지를 재는 것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서로의 어깨를 보듬어 안고 더욱 가열찬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원대책위’의 실무자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군인·전경인자와 동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재판지원 다니느라 “돈이 제일 많이 쓰진다”고 하지만 “전국에 걸쳐 친구를 갖게 되었다”고 밝게 웃는 얼굴에서 진한 동지애와 믿음을 볼 수 있다.

“통일조국을 지키는 군인 아저씨께” 라며 위문편지를 쓸 날은 언제일까?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ICHRDD)**

ICHRDD는 1988년 9월 28일 캐나다 의회입법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1990년 10월 19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92년 예산이 약 29억원 가량이다.

이 단체의 활동목적은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 민주적 기관들의 발전과 그 활동을 권장하며 국제 인권장전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는 것 등이며, 이 중에서도 생존권, 고문과 부당한 징벌, 의사표현의 자유, 당제 자유선거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있다.

ICHRDD는 인권침해 반대 및 민주적 발전에 관련된 활동에 재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예노동,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에 관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선주민·여성·아동·빈민에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이 단체는 버마의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에 특별지원하고 있고, 캐나다의 스리랑카 진상조사단(국회의원 3명 포함) 지원, 동티모 인사들의 의회연설 및 언론활동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투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민중당 대표 ‘김낙중씨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6개월, 자격정지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 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노씨에게 이 죄를 적용하면서 종범 감경규정을 출하였다.”(2면 참조)

노씨는 지난해 8월 김낙중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검찰이 항소했었다.

### 5공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 안기부, 6년 동안 치료비 내다가 올해 중지

81년 4월 25일 안기부 인천지부인 인하공사에 연행돼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온 최영미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최영미씨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가 되어

‘인하공사’에 끌려간 후 지하취조실에서 고문을 받고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한다는 심한 강박관념과 공포감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동안 가족들은 최씨의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전직 경찰이던 최씨의 아버지 최운직씨가 환경으로 사망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하며 단식돌입

전국특수교육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김명기씨(전주우석대 3)가 ‘전시 행정적인 교육부의 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장애 아교육권 위협하는 가산점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평동성당에서 15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2면 참조)

한편 다음 주부터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상경하여 지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앰네스티는 10월 14일 긴급구명활동 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황석영씨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AI는 이 서한에서 황석영씨의 투옥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석영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 • 탄원서

### 1. 사건의 경과

피해자 최영미는 저의 세째딸로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민주화의 불파,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상태였습니다. 제딸 최영미는 이 시절 새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영미는 그렇다고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으며, 다만 시국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나 서신왕래 과정에서 토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1년 6월 10일 오전 7시경 인하공사(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왔다는 전장한 남자 3인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중략) 지하에 있는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미가 연행된 이유는 친구 강혜에게 1981년 4월 25일 보낸 편지가 어떠한 경로로 안기부에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딸 영미는 11시간 동안 취조당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안기부의 연락으로 큰아들 영호가 안기부에 가서 영미를 데려올 때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얼굴이 몹시 창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미는 안기부 요원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한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계속적인 긴장상태와 공포감으로 정신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결국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 2. 정신분열증 치료과정

#### 1) 가족에 의한 치료

영미는 1982년 4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985년 인천기독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특수치료에 의한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한글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한 상태에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 과정에서 가산을 당진하는 한편 제 남편 최운적이 1986년 화병으로 죽는 등 온갖 고통을 당하였습니다.(중략) 이후 제가 6·29선언 직후인 1987년 7월 2일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으며, 상황이 변화한 때문인지 19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저에게 "영미를 일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후 1992년 말까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며 치료해 주었습니다.(가족에 의한 치료상황 일지 생략)

#### 2) 안기부 인천지부 부담에 의한 치료

안기부는 영미를 처음에는 인천정신요양원에 입원치료를 해주다가 1987년 9월부터 1988년 5월까지는 인천정신요양원을 보호자로 하여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중략) 그러던 중 1992년 12월 28일 구월2동 동사무소에서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나마 통원치료조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는데 근거가 된 의료보호증이 안기부의 영향력 하에서 편법으로 발급된 것이고 담당 동사무소 직원이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진료증을 쓸 수 없다는 것임입니다.(중략)

#### 3) 영미의 최근 상태

(전략)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한 상태인데 약물치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 3. 탄원인의 요청사항

김영삼 대통령이 저희 영미를 치료해 주십시오. (중략)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간 상처를 문민정부가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략) 영미는 분명 정부의 잘못으로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정부는 잘못된 정부였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3. 10. 8. 최영미의 모 전진숙(032-467-3584)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전략) 일반교육이 '성적'과 '대학' 만이 삶의 목표로 수조원의 과외비를 쏟아 넣는 상황에서 이땅의 수십만 장애아는 의무교육에서도 제외된 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입시지옥'을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열악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물론 지난 88년에는 단 한차례의 자격시험으로 5천여명의 일반교사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시험제도' 등의 반교육적인 작태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시험문제를 풀거나 단기간의 연수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들 무자격 교사들이 과연 장애아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계는 그동안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에도 "장애아를 두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침묵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빼앗길 수 없다"는 장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15년만인 올 가을 드디어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저는 장애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예비교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1993년 10월 15일

전국특수교육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김명기

## ■ 알림 ■

□캐나다 ICHRDD 간부와 한국인권단체대표와 면담

· 일시 : 16일 오후 1-3시

· 장소 : 성공회 주교회의실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제1차 순회인권교육

· 일시 : 16(토) 오후 6시

· 장소 : 청주도시산업선교회관(0431-271-6412)

· 주최 : 충북연합

· 강연자 : 서준식 인권위원장 / 이종걸 변호사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자료집 발간'

· 발행처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연락처 : 766-1163)

· '고문피해자의 정신병리학' '사건기록' '진단서' '부인의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전해투,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5분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이인제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와 계획체 '전국구속수배 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공동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조준호 '전국구속수배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전해투)' 위원장 등을 비롯한 7명이 구속·수배·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전해투, 노동부 입장 2면 참조)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3월 10일에도 해고자가 전원 복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번 노동부장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

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6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투는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자 복직 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

####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6공화국 기간 동안 3개월에서 많게는 3년 이상의 감옥생활을 한 양심수들이 군 징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 오후 5시부터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복역) 회원 2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번 노동부장관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취업연령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의 윤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에 항의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성명서 2면 참조)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을 풀 것을 요청하여 마지막까지 단식중이던 3명이 사당의원으로 후송, 단식중이던 10명 전원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단식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한편 21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전해투 조준호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두한다.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취업연령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의 윤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수형)은 올해 1월에 징집대상인 500여명의 회원들로 결성되었다. 수십 차례의 병무청·국방부 항의 방문 끝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 인자 병역 면제)를 바枢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징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 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전해투 주장

·총론으로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노동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 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방안을 밝혀줄 것.

둘째,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실현 방안 밝힐 것.

셋째, 구속·수배해제 및 미사면복권 노동자 복권을 시킬 것.

넷째, 병역특례해고자의 사법처리 취소 및 임영취소하고 복직시킬 것.

다섯째, 5·6공 노사관련 해고자 전원복직 방안으로 「대책기구」 구성 할 것.

여섯째, 노동부의 복직 의지를 친명해 줄 것.

### 노동부 답변

·총론으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 「대책기구」 구성은 의미가 있으나 갑작스런 제안이라 검토하겠다. 단 언제든지 해당 실국과 해고자문제를 협의하라.

·각론으로 첫째, 법(중노위 포함)에 의해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자는 복직되도록 하겠다.

둘째, 정부관련 기관 해고자가 총 37명이나 상반기에 17명이 복직되었다. 계속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셋째, 구속·수배 해제 및 사면복권 문제는 상반기에 수배자에 대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했는데 자수한 노동자 중에서 실제로 20%가량은 구속되었다. 조만간 수배중인 56명의 노동자는 수배해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배해체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넷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 해고돼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병역특례 노동자 문제는 입영을 약속하면 사법처리를 않도록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회사측에 복직약속을 합의토록 하겠다. 그리고 대우정밀 해고자 중 15명은 이미 회사측이 복직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섯째, 대책기구 구성은 즉시 어렵고 검토하겠다며 이후 복직문제에 대해 수시로 노동부에 해당 실국과 협의토록 하겠다.

여섯째, 복직에 대한 입장표명은 국정감사에서 하겠다. 복직에 대한 의지나 입장은 처음과 하등 다르지 않다.

### □ 공판안내 □

△10월 19일(화)

·김대영 일경, 2시, 인천지법, 군무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 25일(월)

·황석영,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311호, 국보법.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1.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령자에 대한 부당징집 문제는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령생활 외에도 강제 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는 89년 3월 25일 안기부가 주도하는 공안 합수부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여소야대 시절 시행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그 이후 수많은 시국사범이 양산되었으며 이들중 2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출소직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처지에 놓여있는 530여 청년학생 수령자가 있다. 이들 청년학생 수령자는 3개월에서 3년 가량의 부당한 수령생활에 의해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군입영 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되어 정상적으로 군복무하기도 벅차거나와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전과와 상관없이 취업연령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중략)

2.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해결의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발부되는 영장을 연기시켜 주었고 5월 12일에는 영장 연기조치는 부당징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6월 8일 열린 국방상임위에서 야당의원(정대철, 나병선) 질의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병무청장은 답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국방위 등과 협의하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병무청은 국방부에 건의하였다.(중략) 그런데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9월 말경 마침내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10월 8일 병무청장의 답변에서 이 사실에서 확인되었다.(중략)

3. 우리는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한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국방부가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령자의 병역문제의 해결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군사통치 시절의 법집행이 일반형사법이나 시국사법에게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국사법만의 구제는 일방수의 형평성 또는 군사기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시 80년, 84년, 88년 세차례에 걸친 시국사법 구제선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결국 시국사법 구제문제는 과거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에서 우리는 진정한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국방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결코 과거청산 및 개혁에 스스로 주도적이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여론에 밀려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생색내기식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한다.(이하 생략)

1993년 10월 18일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조교들을 성희롱해 왔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나 아직도 성폭력하면 강간만을 연상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적 회통이나 추

행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성폭력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면 참조).

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서울대 대학원 자치협의회, 서울대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나 아직도 성폭력하면 강간만을 연상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직장여성들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적 회통이나 추

행으로 시위진압 동원을 반대하며 2회에 걸쳐 「탈영」을 시도하여 합계 2년 5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 제6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10월 21일(목) 오후 7시

##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한명숙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인권의 현재 및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6시 30분 이전까지 오시는 분에게 식사 제공)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91년 3월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부대를 떠나던 중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영씨는 지난 5월 28일 석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부대에 휴가를 요청, 생활하던 중 8월 말에 갑자기 부대에서 전화로 복귀지시가 내려와 9월 1일 복귀하여 전역문제를 협의하던 중 탈영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8월 25일 의경재복무는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자신의 부대인 인천시경에 낸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준비 24호, 9월 4일자 참조).

정대협 대표단, 20일 출국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등 대표단 18명은 「2차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 회의」 참석차 20일 일본으로 출국, 25일 귀국한다.

전해투, 농성장 옮겨

여의도 백화점 6층, 전화 784-6037, 팩스 784-6039

### □ 공판안내 □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의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금)

·박석진 일경, 군무이탈, 선고, 9시30분, 수원지법

·황주석의 6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1호

·김부겸, 국보법, 속행, 10시, 서울지법 318호

·존로저, 폭력, 선고, 10시, 서울지법 321호

·김옥기, 국보법, 속행, 10시40분, 서울지법 418호

△10월 25일(월)

·황석영, 국보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311호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번에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무시되거나 은폐되어 왔던 성희롱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보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내 성폭행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라는 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성폭력의 유형중 통상적으로 직장내 성폭행(Sexual Harassment/Sexual Harassment at Workplace)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서, 직장내 성폭행이란 「체용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여기에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위계적 권리에 의한 암시적인 강요나 주위의 압력으로 충분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 없이 판단한 결과')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을 통칭하는 말로서, 이번 사건의 경우-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성추행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성폭행의 한 유형이다.

둘째, 일반적인 직장내 성폭행의 전형이라는 면

91년 4월부터 92년 7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성추행에 대한 상담건수 1024건중에 직장내 성폭행은 117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1)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직장내 폭행중 성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로 나타났으며,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내에서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성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유인방법으로 업무평계, 퇴근, 회식후 차편제공, 고용위협, 속임수, 물질공세, 완력, 구타 등을 동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직장내 성폭행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몇몇 사람만이 당하는 사소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셋째, 직장내 성폭행은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라는 면  
직장내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위험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나 두통·근육통·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한편, 거부했을 경우 오는 해임, 승진기회 박탈, 임금상승에서의 배제, 소극적인 일 수행 등 기본적인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어 직장내 성폭행 문제는 인권침해,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넷째, 법적 대응의 면

이와같이 직장내의 다양한 성폭행(성적 회통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이 직장내에 상존하고 있고, 인권침해, 기본적 노동권 침해와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이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고심했던 것은 외국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친고죄'와 강제성 판단의 문제가 맞물려 직장내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거의 전적으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민사소송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직장내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동시에 현행법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사건의 납득할만한 해결은 물론, 직장내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고 그 대책으로서 성폭력특별법의 올바른 제정과 직장내 성폭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1. 서울대 최고 행정당국자에게 진상규명과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 향후 일주일 동안 여성, 사회단체별로 직장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신고기간을 정하여,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직장내 성폭행에 대한 실태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3.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직장내 성폭행의 실태 및 대체에 관한 공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4. 가해자인 서울대 화학과 신교수를 해임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임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론조성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가고자 한다.

5. 직장내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번 정기국회시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성폭력특별법안」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한다.

1993. 10. 19.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 / 서울대 총학생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변호인단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앞 생략) 이 사건은 대학의 최고지성의 상징인 교수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공무원인 여성에게, 첫째,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을 지속하였다는 점, 둘째, 성희롱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셋째, 해임의 구실을 만들어 일터에서 쫓아내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

넷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

다섯째, 이 사건의 사전공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사과정 연구원 1명을 연구실에서 쫓아내었다는 점,

여섯째, 직장내 성폭력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후,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바로 이러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생략)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 인권하루소식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  
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  
차 보고서가 10월 26-27일  
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  
본 보고서 청문회'에서 논  
의됨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내용요약 2면  
참조).

노태훈씨 집행유예로 나와

20일 서울형사지법 안경  
진 판사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  
현물임을 인정, 노태훈씨에  
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  
죄를 선고받은 노태훈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  
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  
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  
감을 밀했다.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주제: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집회

주최: 민가협 장소: 탑골공원  
일시: 10월 21일(목) 오후 2-3시

##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인 윤미향(김삼석씨 부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756번  
지 단독필지 469호  
전화 895-5589(집), 763-9633,4(직장)

피고소인(피고발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  
수사 책임임자 및 수사관 전원

## 고소(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  
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  
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  
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씨의 자  
택에서 영장없이 김삼석씨를 불법체  
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연행된 후 3~4일 가량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며 수없이 몸  
을 구타하였습니다.

다. 1993. 9. 15. 국가안전기획부 내  
화장실에서 수사관이 김삼석씨에게  
치솔로 성기를 문지르고 손으로 만  
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

에 담지 못할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라. 수사 책임임자도 김삼석씨가  
조사받는 방에서 김삼석씨에게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으며, 약 10여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도중  
김삼석씨를 폭행하기도 하고 허위자  
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성적 모  
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3.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합  
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김  
삼석씨가 1993. 5. 일본에 갔을 때  
(前) 가족교포회 회장 이좌영씨를  
통해 “북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견디다 못한 김삼석씨가  
1993. 9. 15. 경 허위자백을 한 후 오  
른손 엄지 무인하는 부분을 입술로  
깨물어 뜯으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  
했으나 수사관이 강제로 조서에 날  
인을 시켰습니다.

## 4. 김삼석씨가 자해를 시도함

김삼석씨는 그후 1993. 9. 20. 번호  
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목과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후 1993. 9. 22. 김삼  
석씨의 부인 윤미향과 변호사 접견  
시 위와 같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데 대한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5. 김은주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가  
혹행위

가. 1993. 9. 8. 고속버스터미널 근  
처에서 영장없이 불법체포된 후, 헛  
빛없는 지하실에서 전혀 잠을 제우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무릎  
꿇고 바닥에 앉게 하고 손을 들게  
하거나,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치고  
뺨을 때리는 일을 수없이 하고, 허  
위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나. 번호인 접견 후, 수사관들이 김  
은주씨에게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  
을 제우지 않고 수사관들이 교대로  
추궁하였습니다.

다. 조사받는 도중, “이거 안되겠구  
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야지, 웃 벗  
겨야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  
아볼래!” 하는 등 폭언과 성적 모  
욕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 6. 맷음말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  
삼석·김은주 사건 담당 수사책임자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행위와 가혹행위  
및 성추행, 모욕 등의 불법행위  
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위 수사관  
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0월 20일

##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일본정부는 1992. 1. 16., 1993. 8. 5. 2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계획, 모집, 이송, 위안소설치, 경영, 감독 등에 관해 일본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  
한 것을 은폐함은 물론 위안부의 수, 배치, 이동, 전후처리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  
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  
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1993. 3. 14.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그동안 있었던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군국주의와 식민지 침탈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찬  
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체대책협의회는 그 동안의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일본의 전  
쟁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상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와 주장 그리고 일본정부의 태도는 단지 책임  
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 전쟁책임에 따르는 전쟁범죄자들의 처벌과 배상을 명시한 국제법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국제적 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965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종군위안부 문제, 사활한 한류 한국인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전쟁에 따르는 불법행위는 협정  
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된 적이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  
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비인간  
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런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  
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변과 정대협은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  
본의 성의있는 완전한 진상조사와 처벌, 만족할 만한 배상, 진심의 사죄와 반성만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회생되고 죽어갔  
던 피해자들과 지금도 죽음으로 살아가는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예우라고 주장하며 한편으로 우리나라  
를 비롯한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 우의를 가져올 수 있는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의  
무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를 얻은 자를 말한다.

2) 이황화탄소 중독의 증환  
자라 함은 원진레이온에 근  
무한 자로서 이황화탄소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  
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  
한다.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  
은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경  
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 등)

1) 노동부는 원진레이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확인하고 등록하  
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적용대상자중  
등록이 누락된 때에는 노동  
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  
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  
고 전문병원에게 관련자료  
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중독증에 대한 판  
정)

1) 중독증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은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  
발성 뇌경색증, 신장조직 검  
사상 모세혈관 사구체경화  
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나. 미세혈관을 제외한 망  
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 병  
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 기능장  
해 또는 정신장애 중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 (나) 항목의 장해중 1가  
지가 있고 신장장애, 간장장  
해, 조혈계통장해, 생식계장  
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  
압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2) (나), (다) 항목에 해당하  
는 질병이 1가지 있는 경우  
중독증으로 구분하여 요  
양치료를 실시한다.

3) 중독증의 판정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  
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  
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  
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  
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부가 과거청산

검찰 황석영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이 합의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  
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  
법 합의25부(암삼승 부장  
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 10월 23일(토), 이사합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종로에서 용산으로 이사합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 뿐만 아니라 인권관계 자료센타 구축 등의 활동을 벌이기 위해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애정에 감사드리며,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주소 : 120-142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 796-8364 / 5 팩스 : 796-8366 (23일(토) 오후부터 사용 가능)

## 「인권하루소식」 주소를 정리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일 450곳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나 매일 60곳이 배달이 안 됩니다. 정확한 팩스와 가입자가 확인된다면 저희들의 발송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이 무용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25일 이후로 연락 바랍니다.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앞 생략) 별로 철이 없던 제가 9개월간의 전경생활을 하면서 아픔도 많이 느꼈고 많은 깨우침도 얻게 되었습니다. 밤새워 우리 사회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던 빗들, 시위현장에서 그들은 들을 들고 나는 사과단을 들고 맞서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청계천의 노동자들을 징집장에 실어서 서울 근교의 아무 곳이나 버리게 되었을 때 저를 쳐다보던 어린 여공의 핏발선 눈빛, 이른 새벽 서초동 철거민촌에 쳐들어 갔을 때 판자집을 지키고자 울부짖던 아버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의 원망스러운 눈빛.

저에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던 이 땅의 아픔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경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한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복체포조 백골단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너무도 많은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기가 없어 그러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감뉴스 시간에 3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끌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쇠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94중대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복받쳐 올라 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노태우정권을 지켜주느라고 밤낮없이 둘을 맞고 화염병에 데면서 고생했는데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적인이 되는구나. 살인자가 되는구나.’ 저는 미련없이 양심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은 저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전투경찰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방패막이는 이제 더 이상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문민시대가 되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전투경찰의 혜택을 바라는 것은 제가 겪었던 아픔과 눈물을 지금의 후배들에게 더이상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양심수의 장기수분들, 수배자 형제들, 교단으로 돌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들.

얼마전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동지들이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핵심은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절에 군의 민주화를 양심선언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는 문민정부의 시대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최후진술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

판결요지(93. 10. 22.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부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은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같은 조건 속에서도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생활하는데 유독 피고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전경의 시위진압으로 학생들이 많이 부상당했다고는 하나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전경도 역시 많이 다치고 있다. 피고는 본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영웅적이고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위헌일 수 있으며,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려되는 바, 피고의 주장의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언도한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1. 우리의 문제를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다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들어서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전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발부된 징집영장을 연기시켜 주면서, 이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의지를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대상자들은 큰 기대를 안고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문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무청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마침내 지난 9월 말경 법령개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방부측의 입장변화에 편승하여 병무청은 530여 대상자 중 겨우 3%에 불과한 수령기간이 2년 이상인 13명만을 구제해주겠다는 부적임한 입장으로 선회해버렸다. (중략)

2. 문민정부에서 만큼은 정상적인 사회진출과 생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530여 청년학생 수령자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량의 부당한 수령생활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인 학업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군입영 적령기에서 4~5년 이상 경과되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기도 벅차거나와 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중략)

정재원씨(27세)의 경우, 이미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 6개월 째인 상황이었다.(중략) 그는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가장으로 살아가려는 희망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표된 병무청의 입장에 충격을 받은 그의 부인은 유산을 하였고, 그의 가정은 지금 말로는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좌절에 빠져 있다.

노태술씨(28세)의 경우, 1988년 같은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었던 학생 대부분은 개악 이전의 시행령으로 구제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만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재판을 받던 중에 불어닥친 공안정국의 와중에 병역법 시행령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지 7개월만에 다시 개악됨으로써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군에 징집되어야만 하는 불공평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우리는 부당징집에 응할 수 없으며, 징집영장의 일괄연기조치를 요구한다.

국방부가 과거청산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스스로 주도적이지 못하여 우리 문제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무청은 우리 대상자들에 개인적으로 징집영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병무청의 태도를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부되고 있는 징집영장이란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제도적 폭력에 다른 아니라고 규정하며 (중략) 현재까지 발부되어 있는 징집영장은 반납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발부되는 징집영장 역시도 수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3년 10월 23일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주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이사했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한편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25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2면 참조).

또한 ‘민주화실천 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짐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면 방영 취소 압력을 즉각 철회”하고 주장했다.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이형자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에서 1만 3천여명이 서명한 이형자씨 무죄석방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 사과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31호 1면 박석진 일경 기사중 첫문장 ‘선고받았습니다’는 ‘선고하였다’로, 3단 2줄 ‘무죄를 선고한’은 ‘유죄를 선고한’으로 바로잡습니다.

##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시켜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23일 오후 갑자기 취소되어 의혹을 냉고 있다.

사건 발생 때부터 ‘재야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위신’, ‘거짓’과 ‘진실’이

팽팽하게 맞서 첨예한 논쟁을 벌여온 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른 어진다는 예고방송이 나간 지난 17일 이후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sbs 측은 이 방영보류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법원·검찰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의 인터뷰대상자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방영후 말썽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bs는 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검찰측의 협조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서 한점의 하자가 없었음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 있으며 이 방영은 10월 24일로 방영이 연기된 바 있으며 이 방영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sbs의 유서대필 사건 프로그램은 애초에 9월 26일로 방영이 예정되었다가 검찰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10월 24일로 방영이 연기된 바 있으며 이 방영은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 대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유서 대필사건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법관의 고유권한인 증거제택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경우 좌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측은 방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내내 계속된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sbs 측은 이 방영보류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법원·검찰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의 인터뷰대상자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방영후 말썽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bs는 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검찰측의 협조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서 한점의 하자가 없었음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 있으며 이 방영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 결의대회에서  
원진대책위, 연행자 석방·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23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 쪽으로 행진을 하던 원진 노동자와 시민 학생 등 2천여명이 경찰의 최루탄 난사와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짐단폭행해 11명이 부상, 55명이 강제연행돼 종로경찰서,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원진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탑골공원으로 행진을 하다가 종로2가 YMCA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다연발 최루탄을 쏘며 방패,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폭행하여 이방우(38, 원진레이온 노동자)·홍금영(35, 전해투)·한웅지(한양대학교)씨 등 11명이 부상을 당하여 인근 을지병원, 백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55명을 연행,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품신할 예정이고, 34명은 즉결에 넘겼으며 나머지 16명은 훈방했다.

### ◆ 공판안내 ◆

-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 10월 28일(목)
  -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3회, 2시, 417호
  - 오호석, 대통령선거법, 3회, 4시, 311호

### ◆ 알림 ◆

-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 설명서

**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25일 원진비대위와 원진 대책위는 23일의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설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원진비대위와 원진대책위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25일 12시 경 종로경찰서 항의방문을 통해 '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문민 정부라고 자부하는 김영삼 정부의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폭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23일 원진레이온 전 현직 1천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직업병 고용보장 정회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동환, 34세)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명동성당 앞에서 <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완전 정회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원진 특별법 제정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6공 군사통치의 패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10월 24일 방영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몰고 갔으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법원마저도 야합하는 완벽한 유착으로 강기훈을 범죄자로 몰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의혹은 각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sbs의 프로그램 제작은 이 사건의 진실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에 다행이 아니었다.

이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애초에 9월 26일 계획되었다가 경찰의 강력한 요청으로 10월 24일로 연기된 바 있었다.

그리고 10월 24일 방영에 앞서 대법원 공보관이 다시 직접 sbs를 찾아가 제작 담당자를 만나는 등 구체적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뒷구멍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제 판사도 판결로서만 말하지 않겠다'고 밝힌 법원의 의지가 고작 뒷구멍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김영삼 정부 출범후 과거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판결'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그대로 전제하고 있고, 강기훈씨 담당판사와 검사가 지금도 권부의 책임에서 김영삼정부를 떠받들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체 개혁이 진행된다면 문민적 정부의 한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영 보류사태는 누가 진실을 애써 감추려 하는지,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법원과 sbs 당국은 경위를 모든 국민 앞에 해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론민주화를 위한 노력,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문민' 시대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993년 10월 25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세웅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종식

편집인: 심보선

이사했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 지적

최환 대검공안부장이 발포한 10월 25일 수배해제 조치에 대하여 전해투와 민가협은 26일 각각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전해투는 설명서를 통해 "구시대의 유물인 '제3자 개입금지' 위반자를 제외한 것은 이번 수배해제 조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생색내기식 과거청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면 참조)

민가협 또한 26일 발표한 설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외된 수배자의 해제조치와 359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요구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에서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방영 예정이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영 취소된 사태에 대해 그 취소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자율성은 물론, 이미 종결된 재판에 관해 비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면 참조)

##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지난 23일 경찰이 '원진 특별법 제정, 원진 노동자 취업대책 마련' 등을 요구 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에게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며 55명을 연행한 후 3명을 징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26일 또다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재현되어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부쟁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노동자 24명이 26일 오후 3시경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공동 대표 단병호 등 4명, 이하 전노대)에서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항의 방문」에 동참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향하던 중 의사당 앞 지하도 입구에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받게 되었으나 진단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노동자들은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행자 명) 경찰은 전노대 대표단과 민주당 김말통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상당한 윤기립·정형기씨를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게 했으나 진단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노동자들은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행자 명)

### 「인권운동 사람방」 알립

<인권하루소식>에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이나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796-8366

통신망 : Hitel id - rights Pc-serve id - rights

참세상BBS(02-714-8857) id - rights

\*참세상 BBS에는 <인권하루소식>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및 상황, 2면 참조

또한 같은 날 10시 명동 성당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대체마련 3년' 주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중 경찰에 학생들이 강제연행되기도 했다.

원진집회 연행자 3명 구속

지난 23일 명동성당 앞에서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대체마련」 등을 요구하는 원진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치고 탑골공원으로 행진 하던 도중 경찰이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해 20여명이 3-15주에 이르는 중경상을 입어 을지병원·백병원 등에서 치료중이고, 집회참가자 55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전노대 대표단과 민주당 김말통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부상당한 윤기립·정형기씨를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게 했으나 진단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노동자들은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행자 명)

또한 23일 연행된 55명 중 36명은 벌금 5만원의 즉결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훈방되었다.

### ◆ 알림 ◆

「경찰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일시 : 10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영등포 경찰서 앞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 회의

##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발족식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KNCC 인권위, 동두천 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등 23 단체와 문의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전화 708-4181) 발족식을 갖고 김재열씨(KNCC 인권위원장)와 김희원씨(한국교협여성연합회 회장) 등 5명을 공동대표로 뽑았다.

이들은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해마다 2천2백여 명의 미군범죄가 주둔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그같은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한 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3면 참조) 「운동본부」는 또한 「주한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대위」의 활동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

### 26일 전해투 연행자

김용희, 이근하, 강충철, 신승인, 박철만, 이기호, 박원식, 윤기림, 김경순, 김천, 장철규, 안경호, 함평기, 남인숙, 정형기, 유미희, 이정현, 김정호, 김철식, 김달겸, 조희만, 김병갑

### 26일 전해투 상황일지

14:40 국회앞 항의 방문에 참가하기 위해 24명 출발  
15:20 국회앞 지하도 입구에서 전경과 '백골단'이 기습적으로 강제연행-22명 연행됨  
15:50 국회 앞 항의방문은 경찰, 백골단의 방해로 무산 전노대 대표단이 전해투 농성장으로 옮겨  
16:30 연행중 탈출한 2명의 노동자가 상황보고 전노대 대표단, 영등포서로 항의차 출발  
17:20 전노대 대표단, 경찰서앞 전원 닭장차로 연행

### 성명서

#### 정부의 10·25 수배해체 조치는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의 악순환을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10월 25일 대검 공안부에서 발표한 수배해체 조치는 수배로 고통당해 왔던 230여 시국수배자들의 숨통을 풀어주었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청산’으로서의 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도로 노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반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병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문민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처사이자 동시에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수배해체 대상에서 제외시킨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수배자들의 경우, 단지 현 정부 출범후 발생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수배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수배해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라는 현정부가 그 얼마나 무원칙한지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현대그룹 공동임금협상과정에서 현정부는 궁색하게도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서 폐기처분하려 했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들이밀며 어거지 수배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대 임금교섭관련 수배자들을 수배해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이번 수배해체 조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노동쟁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과거의 군사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 구속·해고·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은 또 하나의 생색내기식 과거청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으며 현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현정부는 늦기 전에 이번 조치에 이어 나머지 수배자들에 대한 완전한 수배해체 조치를 단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3. 10. 26.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18:00 전노대 대표단 풀어줌. 김밀통의원 서장과 면담  
19:20 전해투 22명 연행자 전원 음식 거부, 진술 거부.  
21:30 전해투 6명 병원 도착, 병원측 X-레이, 진단서 요구 거부, 경찰 6명 배치.  
22:00 병원에서 전경들 동원 입원자 전원 연행.  
23:20 병원 입원자 경찰서 도착, 윤기림씨 얼굴이 온통 피범벅, 정형기씨 군화발로 목을 밟아 말을 못 할 정도로 목이 붓고, 허리를 다쳐 앓지도 못함.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1945년 9월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왔다. 해마다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120여 개 주둔지역의 매매춘 여성과 주민들, 그리고 미군이 활보하는 전국토의 모든 국민들을 겨냥하여 저질러졌다. 절도와 폭행이 미군의 걸음마다 난무했고, 그들이 저지른 강간과 살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즉 어간 윤금이씨 사건과 같이 인륜마저도 저버린 잔혹성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놀라움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부터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보상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범죄와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군으로부터 피해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첫째 원인으로 주한미군 범죄를 수수방관해온 미국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두번째 원인은 한미행정협정등 한미 사이의 제도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과 피의자 구금권을 한국측에서 가지기 어렵게 규정하는 등 미군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는 제도적 장치로 되고 있다.

세번째 원인은 한국정부의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물어둘 수 있다는 굴욕적인 자세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수사과정에서 평백히 드러난 한국정부의 소극성과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지켜보면서 국민 누구나가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를 뿌리뽑는데 나서야 한다는 결박함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내던진 한미우호관계는 있을 수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존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에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 많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다음의 활동을 온 국민과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

1.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엄정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범죄와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국민의 자주성을 믿으며,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주적이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993년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다비타의 집, 두레방, 동두천 민주시민회, 메리풀수녀회 여성분파, 민주주의민족통일 군산옥구연합,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23개 단체)

###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24일 방영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씨 유서 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송 시작 바로 전에 ‘방송국 사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취소되었다.(중략)

그런데 그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전에는 판사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해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라 해서 그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을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단일 그 논리대로라면 재판계류중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이 아니되고, 재판 후에는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중략) 이번 불방사태에 대해 대법원과 방송사측은 그 경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조속히 방송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3.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간사 홍성우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 이사했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26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노동자 22명이 전경과 무술경관(백골단)들에게 얼굴과 목에 심한 부상을 입는 폭행을 당했으며, 이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7일 오후 7시 반경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석방되었다. 제외된 2명은 기소중지자인 정형기(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 이기호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씨이다.

석방되기 전인 27일 오후 3시에는 전해투 대표단과 학생 30여명이 '폭력행위의 진상규명 및 폭력에 해당한 경찰의 의법조치'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영등포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경찰서 앞에서 연행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행위

### 「인권운동 사랑방」 알림

#### <인권하루소식>에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이나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796-8366

통신망 : Hitel id - rights Pc-serve id - rights  
참세상BBS(02-714-8857) id - rights

\*참세상 BBS에는 <인권하루소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에 대해 전해투는 '백주 대낮에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에게 느닷없이 가해진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규정하고 폭력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지난 26일 전해투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문민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김화남 경찰청장은 청와대에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바 있어 그 발언의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

경찰 당국이 아무 일없이 인도를 걸어가던 전해투 소속 노동자를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무더기로 덮쳐 폭행하고, 무조건 '닭장자'로 연행하였다. 그리고 연행된 노동자에게 모포를 씌우고 방패로 내리찍기도

100명의 변호사들이 27일 파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

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현정의 봉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

안자 중에 한 사람이고,

죄없는 국민의 공포와 원

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 근무하였으

며, 6공 공안통치의 주역

인 김찰총장'을 지낸 김기

춘씨의 변호사 개업이 허

용되었음에 '착잡한 마음

을 금할 수 없다"며 서명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압력으로 방영 취소

### 『유서사건 총자료집』

여기 진실을 향한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 2700쪽/전3권/4·6판/가격 10만원

구입문의 : 강기훈 공대위(796-8364/5)

연행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계 및 시위에 대한 대응이 10월 말에 열릴 예정인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독재시대의 강경진압 방식으로 돌아선 것 같아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에도 경찰은 원진집회에 다연발 최루탄 난사, 곤봉 등으로 구타하였으며, 55명을 연행 3명을 구속시켰다. 또 26일 「전국 특수교육과 연합」(회장 김태균, 우석대 3년)의 집회에서도 참가자를

### 변호사 자격 실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준씨 개업허용 계기로

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2면 참조).

이들은 또 김기준씨의 그동안의 행적이 변호사 사명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존중'(변호사법 1조)에 어긋나는 데도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에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에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변호사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 '김기준'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준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친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음을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이다. 그것은 누가 거부하고 시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한 개인, 그것도 이 나라 법무행정의 고위 직책을 오랫동안 역임한 사람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활기勃勃하는 것은 차라리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나라 자유의 억압과 현정의 봉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죄없는 국민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으로서 상당기간 근무하기도 했다. 대규모의 인권유린을 낳았던 제6공화국의 이른바

### ◆ 알림 ◆

#### □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 항의 기자간담회'

·일시 : 93년 10월 28일 오전 9시  
·장소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실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주최 :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  
·연락처 : 945-7395 문국주, 747-4320 이상률,  
763-9633 윤미향

#### □ 민가협 목요집회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과  
강기훈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종로 3가)

#### □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인가?  
·일시 : 93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장소 : 여성백인회관(순복음교회 옆)

·주최 : 여연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입장발표 : 박현기(민자당 의원)/강철선(민주당 의원)  
최영애(여연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친고죄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토론자 : 박원순 변호사/김정열(장애우 권리문제연구소 실장)/손봉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 자료집 발간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4x6배판, 54쪽, 값 1,000원 (문의 : 전화 521-5364)  
·내용 : \*장애인 교육현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교육부),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민주당),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공대위) 전문 등이 실려 있음.

'공안통치'의 주역으로서의 검찰총장이었던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가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검찰총장으로서 "자유가 없는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없는 자유는 가질 수 없다" 또는 "전체 국민의 생존권보다 더 큰 인권은 없다"는 등의 전제주의적인 언사를 마구 고창하고 다닌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 지낸 인물로서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협력 공직자들을 모아 야비한 선거운동을 부추긴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죄책까지 지게 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가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고급양주 등을 돌리면서 또 한 차례의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법조인 됨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의 개인의 변호사 개업을 보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그의 행적이 한 법률가, 법조인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행적들은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판단하는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의 일생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말살과 인권의 억압에 시종하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판단하여도 분명히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존중'(변호사법 제1조)을 으뜸가는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자격에 어긋난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 변호사법과 관련법령이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데 법의 불비가 있음을 한탄하고자 한다.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하거나 신고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법의 미비때문에 그의 변호사 개업을 저지할 수 없었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기회에 거의 모든 외국이 그려온 것처럼 사회공익적 존재로서의 변호사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 촉구한다.

오늘 한 법조가족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삼는 가슴 쓰라린 경험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 거기에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의 확립이라는 유익한 기회로 이어질 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견해를 밝혀두는 바이다.

93. 10. 27.

### 서명 변호사 일동

강대성	강명준	강재현	고영소	고인배	권원용	김경천
김기열	김명한	김미화	김봉겸	김봉석	김선수	김시영
김원근	김웅조	김인만	김종길	김준식	김충진	김창동
노영록	노현준	도건철	도두형	류선호	문한성	박성귀
박성호	박수근	박용근	박원순	박인구	박인재	박종술
박재승	박찬운	배금자	배진수	백승현	서성섭	선병주
소심영	송동호	송유영	송홍식	신만중	신현호	안봉진
안상수	안상운	양태훈	우수영	유선영	유옥	윤기원
윤정식	이경우	이경현	이기욱	이대복	이덕우	이백수
이상증	이성천	이석범	이석태	이승희	이우승	이원영
이원재	이일우	이정일	이정한	이종걸	이해수	이호조
이호일	이홍식	이후동	임홍종	장경찬	장주영	전용희
전원책	전해철	정인봉	조재연	진효근	차지훈	최명규
최은준	최재천	최창희	표재진	하영석	한수복	한이봉
한택근	홍석한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이사했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주장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는 10월 28일 오전 9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김삼석(30세)·김은주(24세) 씨 남매가 안기부의 함정 수사 및 성고문 등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씨 남매는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45일간의 안기부·검찰(공안1부 김영한·함귀용 검사) 조사를 받은 후 지난 24일 형법상의 간첩 혐의와 국보법상의 금품수수, 짐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 남매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재일한통련’ 기관지 <민족시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좌영·권용부씨 등에게 결혼 축

### ‘인권운동 사람방’ 알림

#### <인권하루소식>에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이나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796-8366

통신망 : Hitel id - rights Pc-serve id - rights

참세상BBS(02-714-8857) id - rights

\* 참세상 BBS에는 <인권하루소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의금·용돈 등의 명목으로 100여만엔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면서 북한 간첩에게 공작을 받았다는 안기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씨 남매사건이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의한 함정 수사는 및 성고문 등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씨 남매는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45일간의 안기부·검찰(공안1부 김영한·함귀용 검사) 조사를 받은 후 지난 24일 형법상의 간첩 혐의와 국보법상의 금품수수, 짐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 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여성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위에서 발표한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결과”에

격을 주었다. 증언을 한 박아무개(28세, 여, ‘남누리영상’ 제작부장)에 따르면 자신과 2년 동안 같이 일하였던 배아무개(27세, ‘남누리영상’ 대표)가 ‘안기부 프락치공작의 회생물’이라며, 배씨의 양심선언을 촉구하였다(증언내용 2면 참조).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 특위」(위원장 최영애, 이하 특위) 주최로 28일 오후 2시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최영애 특위위원장이 특위에서 지난 9월 8-20일 서울·부산 등 5개 도시에 사는 성인 여성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위에서 발표한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86.9%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찬성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 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 하도록 하기 위해’(44.9%)가 으뜸이었고 다음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사건즉시 증거확보, 가해자 체포 등이 쉬울 것’으로(27.1%), ‘그동안 고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14.4%), ‘신고율이 높아지면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13.6%) 등이었으며 정반대로 그대로 둬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3.1%에 지나지 않아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

더구나 친고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의 경우(전체의 12.9%)에는 개인의 명예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들 중 68.3%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할 법적장치가 마련될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대부분이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위가 제안한 성폭력 특별법안과 민자당에서 내놓고 있는 법률안은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고소시한,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위에서는 친고죄를 전면폐지하고 고소시한을 없애야 한다는데 반해, 민자당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의한 성폭력 행위 등에 한해서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고소시한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법대로 하더라도 성폭행한 자를 고소해도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비밀누설 등을 더욱더 성폭행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수사상의 기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대리인 제도 \* 비공개 재판 \* 여성 경찰 조사관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위의 안은 이런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재판의 비공개 진행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 수사에 미흡한 감이 있다.

###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요구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문의환·계훈제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백주대낮에 불법연행, 구타 등이 일어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폭력을 행사한 전경의 의법조치 \*부상자 치료를 비롯한 모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26일 영등포경찰서에 불법으로 연행된 ‘전해투’ 소속 노동자들이 경찰의 훈방방침에 경찰서장의 불법연행·구타에 대한 사과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모포를 뒤집어씌우고 방패로 내리찍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 윤금이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씨 폭행혐의 미군 성폭행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28일 윤금이씨 살해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에 대한 항소심에서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 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난 92년 10월 28일 윤금이씨가 살해된 날로 재판전에 1백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서울고법에 모여 ‘윤금이씨 1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한편 전우섭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전우섭 공동대표 등 5명, 이하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한 ‘운동본부’ 대표단 3명은 같은 날 오후 5시 김국혜씨 폭행 사건 공판검사인 조연선 검사를 면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존 살로이 로저 병장에 대해 검찰이 강간혐의를 추가기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결과적으로 성폭행이 인정되어 처벌되었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고 강간혐의를 추가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표단에게 밝혔다.

###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 연기 의사 밝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노태술(28세), 정재원(27세)씨 등에게 발부된 징집영장 연기방침을 병무청이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집영장을 반납한 ‘양군모’는 26일 병무청 징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병무청 측에서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사유를 첨부하여 연기권을 제출하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징집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28일 밝혔다(인권하루소식 31호, 10월 23일자 참조)

### 인권단체, 강수림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

민가협, 민변 등 10여개 인권단체와 강수림의원(민주당)이 28일 오후 7시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배해제 문제, sbs의 강기훈씨 관련 프로그램 불방문제 등 최근의 인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남누리영상’ 제작부장 백씨의 중언내용 요약

93년 7월경 : 김은주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아무개로부터 “8월이나 9월에 일본에서 사람이 오니 일본어를 잘하는 온주씨가 그 사람을 만나달라. 만약 전해주는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갖다주라”는 부탁을 받음.

93년 9월 8일 : 김씨는 아침에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음.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여 ‘한국말을 잘하는데 내용도 모르는 일에 나서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조금 있다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한 후 백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다시 ‘일본에서 온 사람’이 만나자는 전화를 하여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지정한 강남터미널에 나감. 전화로 웃차림과 인상착의를 너무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금방 찾음. 그 사람은 김씨를 만나자마자 말도 없이 봉투만 주고 감. 김씨는 ‘백씨한테 전해주라는 뜻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돌아오다가 100여미터도 못가서 10-15명의 안기부 요원들에게 체포됨.

9월 11일 가족 면회와 변호사 접견에서 밝힌 내용 : 안기부에서 본 봉투 속에는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선집」 등의 김일성 저작물이 있었음. 안기부에서는 김씨에게 그 물건을 전해준 사람과 중간 연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음. 봉투를 김삼석씨와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추궁만 받음. 김씨는 잡하는 순간부터 ‘백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백씨가 중간에서 연락을 하였다”는 말을 함.

배아무개씨의 행적 : 백씨 중언 요약

9월 8-10일 : 백씨는 오후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함.  
10일 3-4시경 : 저녁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김씨 남매가 3일전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나도 사무실에 있으면 안된다”며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감.

11일 : 오전에 시경소속이라며 7명의 수사관들이 ‘남누리영상’ 사무실을 수색. 백씨에 대해 물어봄.

11일 저녁 : 백씨 만남. 백씨는 “검사로 있는 삼촌에게 얘기했었는데 김은주씨가 안기부에서 나를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피신하겠다”고 함.

14일 : 새벽 3시와 새벽 6시에 박씨를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옴.

15일 이후 : 연락이 안되다가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10월 27일 연락을 해왔다고 함.

이전 행적

92년 5-6월 : ‘이름없는 영웅들’이란 영화관계로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음.

92년 6월말 : “어디 가야 한다. 가진 싫지만 이내창열사가 왜 죽었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5일동안 안기부원들과 부산 등지를 다녔다고 함.

92년 7월 이후 : 몇차례 정신착란 일으킴. 사무실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맨발로 창문을 통해서 나가고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들고 죽은 어머니한테 “엄마 개네들이 때리려고 해”라는 말을 하거나, 웃을 전부 벗으려고 하기도 함.

93년 3월 : 김삼석씨 결혼식 비디오에 참석자를 거의 전부 크로즈업시켜 찍음. 이유를 묻자 “어디 전해줄 곳이 있다”는 말도 함.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이사했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조용환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B협약 제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 종로서장, 원진비대위 관련자 출두요구

「원진직업병 대책과 고용 보장을 위한 원진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활동환, 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업병 증세가 있는 김명수씨 등 7명을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며 29일 김형진 종로경찰서장을 폭력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비대위는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와 배상

### 「인권운동 사랑방」 알립니다

#### <인권하루소식>에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현안이나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796-8366

통신망 : Hitel id - rights Pc-serve id - rights  
참세상BBS(02-714-8857) id - rights

\*참세상 BBS에는 <인권하루소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진비대위 위원장) 박무영  
(구리노동상담소 대표) 씨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 '간첩죄 기소' 김삼석씨 유령단체 대표 조작 의혹

한겨레신문 10월 29일자 15면에 실린 「노동해방 민족통일 노동자선전단 남·북부지부」 명의로 실린 김삼석씨 관련 의혹광고에 의혹이 있고 있다. 이 광고는 위 단체 명의로 「선전단 대표를 간첩조작하는 인기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김씨 남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김삼석씨를 면회하고 온 윤미향(김삼석씨 부인)씨는 김삼석씨가 이 광고를 보고 "이 단체의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며, 누군가에 의한 조작 혹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 ◆ 알림 ◆

□원진·전해투, 구속자 석방 및 폭력경찰 규탄대회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 4시  
·장소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원진레이온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을 위한 비대위

□노동악법 개정 및 해고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제6차 전국 해고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 6시

·장소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주최 :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후원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제1회 민족자주 시민의 밤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은...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 4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후원 : 연세대 총학생회, 국민일보사

###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

10월 21-22일 남북한·중국·타이완·필리핀·일본 등이 참가한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인권소위 특별조사관의 활동 적극 지원 \*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등에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결의문 참조).

###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양심선언 전경 이재원 일경에게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원 일경은 91년 12월 「전경대해체」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생활을 하다가 올 7월 21일 양심선언 군인전경들과 58일간의 농성증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려 가는 도중 다른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이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군·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 11월 26일 오전 10시.

### 배병성 3차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

29일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에서 김춘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특수 공무집행방해처사」 혐의로 기소된 배병성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경찰 이진광·안윤식·정해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오늘,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 열려

작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이 오늘 오후 4시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문화행사는 주한미군 범죄근절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지난 26일 발족한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

###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1993년 10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린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한 남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대표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작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 이후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있는 전후처리를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아시아 각국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 후 제1회 회의에 참가한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재판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부각되었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기까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부분적이나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연대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지금도 과거의 괴로운 경험을 밝히지 못하는 전 일본군 「위안부」도 많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우리들은 이 문제에 관한 각국내의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한다.
2. 피해국은 국제법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및 모든 국제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도록 한다.
5.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적 억압이라 규정하고 모든 성적 노예제도와 강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다.

1993년 10월 22일 참가자 일동

표: 전우섭 등 5명)가 주최한다.

가수 류금신·안치환, 연극배우 김지숙, 김경란 춤패, 시인 김남주, 소설가 윤정모, 서총련 노래패 「조국과 청춘」 등이 참가한다.  
추모제 및 시민의 밤은 \*제1부 「들어라 양키야」라는 주제로 주한미군의 합성을 이루어진다.

# 인권하루소식

93년 11월

(제37호 - 제57호)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반성문 요구하는 자진출두에는 응하지 않을 터”

수배자대책위 2일 새벽 총회에서 잠정 결정 2일 오전 기자회견

대책위는 일단 해산하기로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1일밤부터 2일 새벽까지 연세대에서 총회를 열고, 검찰의 불구속 명단 발표를 실질적인 수배 해제 조치로 받아들여, 8월 7일부터 계속해온 농성

을 요구하여 자수형식의 자진출두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책위는 총회에서 검찰의 230명의 불구속 명단 발표를 실질적인 수배 해제 조치로 받아들여, 8월 7일부터 계속해온 농성

## 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전

31일 오후 8시경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민중 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씨(31세, 지부장)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민정련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월 3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동대문지부 회원 11명이 봉고차로 사무실에 돌아오던 중 오후 8시 30분경 마포대교

위에서 승용차 3대가 이들을 가로막고 연행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이 빠져나와 연행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본부에 따르면 “회원들은 서울경찰청 분실 옥인동 보안 수사2과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추측되며, 동대문지부 봉고차로 사노맹의 플래카드와 유인물 등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정련 부산지부 서전미씨(23세, 부산성모병원 안과근무) 등 회원 2명도 사노맹 대자보를 부착한

##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합니다. 일간 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겨보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혐의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나, 구금장소는 1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자민통’ 사건 수배자 연행 허탁·박영재씨 남영동으로

안기부에 의해 ‘자민통 사건’ 총책으로 수배를 받았던 허탁씨(28세)와 조직담당으로 지목되었던 박영재씨(28세)가 10월 30일 8시 20분경 신촌 흥익서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허탁씨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총책으로 수배를 받아왔으나, 자신이 활동했다는 시기는 군대에 있었다고 수배증에 주장해 왔었다.

AI 아시아 조사관 방한 정기방문자, 17일간 일정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조사부 조사관 Pierre Robert 와 Clare McVey가 1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1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이번 방한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방문으로, 민가협, 민변, 강기훈 공대위 등 여러 인권단체와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다.

## ◆ 공판안내 ◆

□ 11월 2일(화)

- 이상옥, 국보법, 10시, 속행, 서울지법, 423호
- 백성기,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313호
- 김대영, 군무이탈죄, 10시, 2회, 인천지법, 103호

□ 11월 5일(금)

- 송재희의 4인, 국보법, 2시, 2회, 320호
- 황주석·조국의 5인, 국보법, 2시, 5회, 321호

##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17호-36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0/5	17	1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내 인권 내가 지키자/'장애인 공대위' 김정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장/공판 안내
		2/3	인권하루소식 창간호-14호 총목차(9월 7일-9월 28일)
10/6	18	1	단식중인 노동자 2명 병원 후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민주당사 단식 26일째/불교인권위, 수사 기관 개혁 촉구
		2	'제도개혁, 인권교육' 사업에 역점/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회의 취임 인사말
10/7	19	1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름에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씨에게 2년 구형/북한 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2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또 탈진,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부분 추가기소 안해/자민통 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씨 연행/공판안내/민가협 목요시위
10/8	20	1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석방요구, 민가협 2차 목요시위
		2	심금섭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정대협 북한 접촉승인 요청, 전후 문제 처리 토론회 참가 위해/양심선언전경에 '재복무명령', 이지문 중위 등 파면취소 탄원
10/9	21	1	전해투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동성 들입,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국제변호사 협회, 노태훈씨 석방요구,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2	김삼석씨, 검찰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번, 검찰수사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황주석씨 등 '사과원' 사건공판/심금섭씨 구속집행정지/공판 안내
		1	'유서대필사건' 중요증인 홍성은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강기훈씨, 검찰 국감장 증인/검찰, 파장 막으려 고심 기자실 등 출입금지
10/12	22	2	황석영씨 결심공판, 합기용검사 무기징역 구형/대법원, 김낙중씨 무기징역 확정/"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해가는 투쟁" 9일 5차 결의대회 열려/홍성은씨 기자회견문(전문)/공판안내
		3	홍성은씨 기자회견문/홍성은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10/13	23	1	김삼석씨 성고문사건, 국내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문의환목사, 이창복의장 등, 민주당·노동부 등에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황석영씨 무기 구형 항의성명서 발표/앰네스티, 정부에 수십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2	국제앰네스티, 한국:수십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민예총 등
10/14	24	1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식, "문국진씨 고통 외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해고노동자,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후 해산, 15·18일 경 노동부장관과 면담하기로/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씨 무죄석방 탄원
		2	문국진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의사 소견서
10/15	25	1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증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캐나다 인권단체 ICHRDD대표, KONUCH 대표단 만날 예정/ 민가협 '목요집회' 가져/알림
		2	단체탐방·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군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ICHRDD, 캐나다) 소개
10/16	26	1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5공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특수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하며 단식돌입/AI, "황석영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2	최영미씨 가족 탄원서/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알림
10/17	27	1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전해투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0/19	27	2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 가며/공판안내
10/20	28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씨 첫 공판 열려/정대협 대표단 20일 출국/전해투, 농성장 옮겨/공판안내
		2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공동성명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0/21	29	1	김삼석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씨 20일 접수, 김삼석씨 가족과 면회중 안기부원 이름 밝혀/사노맹 관련 문영찬씨 구형 7년/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노태훈씨 집행유예로 나와
		2	안기부원 고소(고발)장/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0/22	30	1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대표 증언,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검찰 황석영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2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10/23	31	1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전호 수원지법 부장판사/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2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10/24	32	1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시켜/황석영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강기훈·공대위·민가협, 즉각 항의성명/폭력남편 살해 이형자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2	문민정부 시대에 최루탄 난사, 11명 부상 55명 연행, 23일 원진결의대회에서, 원진대책위 연행자 석방·폭력책임자 처벌 요구/성명서, 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공판안내
		1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생색내기식 과거청산" 전해투·민가협 10·25 수배조치 한계지적/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10/25	33	2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26일 전해투 연행자 및 상황일지/전해투 성명서-정부의 10·25 수배해제 조치는 과거정산이 아니라 과거의 악순환을 담습하는 것일 뿐이다
		3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민변 성명서-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0/28	34	1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보고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변호사 자격 실질적 심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씨 개업허용 계기로
		2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김기춘'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알림, 민가협 목요집회 등
		1	"안기부 합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주장/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10/29	35	2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요구/윤금이씨 살해혐의 미군 합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씨 폭행혐의 미군 성폭행부분 추가기소 않겠다고/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연기 의사 밝혀/인권단체, 강수람의원과 인권현안 간담회 가져/「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사건 대책위」 관계자와 「남누리영상」 제작부장 박씨의 증언내용 요약
10/30	36	1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원진비대위, 종로서장 폭력혐의로 고발, 종로서장 원진비대위 관련자 출두요구/「간첩죄 기소」 김삼석씨 유령단체 대표 조직 의혹/알림, 원진·전해투 구속자 석방 및 폭력경찰 규탄 대회 등
		2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요구/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배병성 3차공판, 경찰 3명 증인신문/오늘, 윤금이씨 1주기 추모제 및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 열려/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6공 정치수배자, 자진출두 않기로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혀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

6공 당시 시국사건 수배자들로 당국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연세대에서 85일 째 농성을 벌여온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정신, 27세,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2일 오전 9시 30분에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선별처리와 반성문 강요라는 구시대적 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검찰의 출두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기자회견에서 "공안관련 수배자 230명에 대한 불구속 처리방침은 6공 때의 정상적이지 못한 정치상황에서 발생한 수배문제의 고리를 푸는 것은 과거청산과 인권회복의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검찰의 입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30명에 대한 불구속조치는 개혁정신에 입각한 실

질적인 수배해제 조치로서 그 어떠한 전제조건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대책위는 "검찰이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인 불구속 처리방침을 정했으면서도 25명을 제외하여 선별처리하거나, 과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세에 대한 시정과 항의의 표시로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1일 저녁 62명의 대책위 회원 중 40명의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3일 서강대에서 열리는 서종현 학생의 날 기념집회에서 대책위 해단식을 갖고 86일간의 농성은 일단 풀기로 하였으며, 수배 일괄해제 등의 조치가 있

을 때 다시 모이기로 했다.

불구속 대상자 집에 들어가기로 한편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불구속 처리방침은 실질적인 수배해제 조치이므로, 명단에 들어 있는 수배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에 일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행동방침을 설명하였다.

31일 연행된 민정련 회원, 2일 전원 풀려나

31일 서울시경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던 민중정치연합(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지부장 등 12명이 2일 전원 석방되었다.

경찰은 1일 저녁에 문씨와 이연산씨(동대문지부 사무장), 서진미씨(부산성모병원 안과근무) 등을 제외한 9명을 1차로 석방한 후, 나머지 3명도 2일 오후 6시에 석방하였다.

문씨 등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유인물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저녁 8시 경에 경찰에 연행되었다.

## 사과드립니다

11월 2일자 <인권하루소식>이 한국통신의 기계불량으로 팩스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국통신측과 협의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려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빨길 옮기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 단체탐방·2/불교인권위원회

### "모든 중생을 부처로 삼기고자 하는 불교인권위원회를 찾아"

편집자 주 : 지난 10월 15일자 25호에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의 단체탐방 기사를 게재한 이후에 근 보름만에 다시 단체탐방 기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판에 단체탐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진관 스님의 걸은 승복 뒷자락과 두손 모아 합장하며 맞아주는 상근자의 몸짓 외에는 여느 사무실과 다름없이 컴퓨터와 패시밀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이곳은 불교인권위원회!

수줍게 따라주는 녹차의 은은함 속에 둘러보니 어느 공부하는 스님의 공부방인 양 무언가가 빼곡히 들어찬 느낌을 주는 곳이다.

민족이 분단된 이후 가치체계의 혼란이 커져 인간중심의 사고를 무용하게 여기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져오고 인간소의 현상과 더불어 법률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 속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불교인으로서 삶의 고통과 사회구조적인 고통을 여의고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해방되는 정토세계의 구현을 위해 한걸음을 보태고자 지난 90년 11월 20일 동국대에서 창립법회를 가짐으로써 출발하였다.

불교인권위원회의 창립선언문을 살펴보면 당면 실천지침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불제자로서 소속 정당, 종파, 연고 등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인권보장이란 대의를 위해 제반 인권정보·지식의 홍보, 인권에 관계된 법률상담 및 인권옹호 시민운동의 주관과 지원, 참여등을 당면 사업으로 체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40여 스님의 인권위원과 일반불자가 중심이 된 후원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위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후원회원의 수와 질을 강화하여 사업의 대중성을 높이는 것이 당면 목표라고 한다. 후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권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분들에게 계속 자료를 보내고 관계의 끈을 강화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인권위원회 사업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을 해오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였다. 얼마전까지 사무실이 있었던 조계사가 공사를 하는 통에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사무실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교인권위원회가 먼저 마련한 거처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이다.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가 주축이 된 '나눔의 집' 전립추진위원회,가 92년 8월 10일에 구성되었으며, 사업추진 3개월 만인 그 해 10월 31일에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임시 개소하여 몇분의 할머니를 잠시나마 모시게 되었다. 그 후 경기도 광주에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나눔의 집' 전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수 이선희씨도 노래공연 등을 통하여 모금사업에 일조하였고, 현재도 모금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나눔의 집'에 모인 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교인권위원회의 집도 두동실 솟아오르고 더욱 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모으는 인권법당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한없이 커보이는 인권법당의 문을 나선다. 정리 /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 ◆ 알림 ◆

### □교회여성연합, 무의탁 장기수를 위한 사랑의 조끼뜨기 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여성연합회)는 '무의탁 장기수를 위한 사랑의 조끼뜨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벌인다. 1차분은 12월 10일까지, 2차분은 94년 1월 10일까지이다. 실을 사서 조끼를 직접 짜거나 여성연합회에서 실을 받아 조끼를 짤 수도 있다. 후원할 사람은 1벌에 1만원씩 넣 수 있다.

전화 : 708-4181/3

계좌번호 : 조흥 308-01-107296 김희원

국민 813-01-0190-036 윤문자/상업 436-05-005721 윤문자

### □원진문제의 대책을 위한 공청회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발제자 : 산업노동정책적 측면/김진균(민교협,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김용익(인의협, 서울의대 교수)

법률적 대안/이원영(민변, 변호사)

·토론자 : 조홍식(복지분야, 서울대 교수), 양길승(의료분야, 산보센터 설립추진위원장), 박석운(법률분야, 노동정책연구소장)

·사회 : 김상곤(민교협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일시 : 11월 3일(수) 오후 6시-9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 □고 중앙대 이내창 총학생회장 추모비 제막식

·일시 : 11월 3일(수) 오후 2시 / ·장소 : 중앙대학교 안성교정 자주마당

·주최 : 고 이내창 총학생회장 추모비 건립위원회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원진문제의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3일 6시부터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원진폐업에 따른 사후대책에 관한 요구’를 9월 14일 국회에 청원함에 즈음하여 원진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 구체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고 쥐지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나서 산업노동정책적인 측면(김진균 서울대 교수), 의료대책(양길승 인의협 회원), 법률적 대안(이원영 변호사) 등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김진균 교수는 “인권사의 수요가 국내외에 걸쳐 있

으므로 현재 공장을 폐기 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체 공장을 세워 생산과정을 자동화시킨다면, 노동자에 대한 산재위험성과 현재의 종업원을 상당히 고용할 수 있다”면서 원진레이온 폐쇄방침은 종사자와 및 노동자, 직업병 환자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처방으로 책임회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길승씨는 “원진레이온의 폐업이 직업병 문제의 왜곡이나 외면이 되어서는 안되며, 작업조건과 환경을 직업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지한 회사와 관리를 방기한 정부가 직업병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면 참조).

이원영변호사는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잡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기는 수고로 보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일시 : 11월 4일(목) 오후 7시  
·장소 : 부산 놀원소극장(동구 범일동, 631-0770)

### □민가협 목요집회

주제 : 야만적 고문자행한 이근안을 겸거하고 고문수사근절하라

88년 수배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조속한 검거와 고문을 당했던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일시 : 11월 4일(목) 2시 ·장소 : 탑골공원

### 이내창 열사 추모비 제막식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는 3일 오후 2시 중앙대 안성교정 자주마당에서 문익환 목사, 김민하 총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추모비는 9월 1월 추모비 건립기공식을 갖은 후 2개 월만에 세워지게 되었다.

추모비에는 중앙대 6인 열사를 상징하는 높이 1.7m의 돌기둥 6개와 이내창 씨의 흥상을 조각되었다.

### 사노맹관련 문영찬씨 2년 6개월 실형선고받아

서울형사지법 22부는 문영찬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지난달 20일 이종대 검사는 7년 구형을 했었다.

### ◆ 알림 ◆

#### □이형자 무죄석방 촉구의 맘

-이 가련한 어머니를 자녀들에게

14년간 남편의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오다 살인자가 된 여종교사 이형자씨(37세)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열린다. 이씨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생과 친구, 딸의 동언과 시낭송, 무용, 춤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아내 구타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된다.

##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총합센타 주진설립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생략)

### 2.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의 발생경과와 현황

원진레이온에서 문제가 되는 직업병은 널리 알려진 이황화탄소(CS<sub>2</sub>) 중독증이다. 그밖에도 계란 씻는 냄새가 나오고 눈에 작극이 심한 이황화수소(H<sub>2</sub>S)와 황산 등 강산에 의한 건강장애와 소음에 의한 난청, 손목에 무리한 힘을 계속 주어서 발생하는 수근터널증후군으로 몇 사람 치료받은 경우가 있고, 또 최근 퇴직노동자들이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은과 염소가스에 의한 건강장애 같은 것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묻혀 있는 형편이다.(중략)

최초로 환자가 보도된 것은 1981년이다. 7월 24일 병사과에서 근무하던 홍원표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국립의료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급성중독으로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업환경조사나 정밀검진이 뒤따르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기되었다.

만성적인 중독의 회생자가 알려지게 된 것은 그보다 6년이 지난 1987년이다. 당시 원진에서 14년에서 18년을 근무하였던 노동자 4명이 반신불수, 고혈압, 정신이상, 당뇨, 팔다리 마비나 통증 등의 증상으로 시달리다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었고, 그후 정밀검사를 통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을 받았다.(중략) 그후 자신들의 고통을 사회에 호소하여 1988년 7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함께 모여 회사쪽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집단적이 대응이 시작되었다.(중략) ‘원진레이온 직업병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1988년 8월 8일) 노동운동가와 보건의료인, 일반 사회인사가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원진레이온에서 일하였던 노동자중 직업병을 호소하는 분들이 모여 ‘원진레이온 직업병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원가협, 88년 8월 18일)를 결성하여 활동에 나섰다.

(중략) 88년 9월 14일 회사와 피해 노동자인 원가협의 대표, 대책위원회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함께 학의서를 만들었다. 이 학의에 따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위원회가 회사측 추천의사 3인과 피해자측 추천의사 3인으로 구성되어 47명의 직업병을 확정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1급 1억원에서 14급 1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였다.(중략)

### 3. 폐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원진레이온은 폐업하게 됨에 따라 직업병 환자들은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작업장에서 지속적은 폭로가 없어 집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직업병에 걸릴 노동자는 없게 되겠지만 이미 이황화탄소에 상당기간 폭로되어 왔기 때문에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잠재적 가능성성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대책 등 특수한 방안을 만들지 않는 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고통받을 많은 노동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특수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현실 때문이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은 지금까지 원진레이온에서 문제가 되어온 과정이 바로 웅변으로 보여준다. 증상이 일반질병에서 보지 못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양상이 특수할 뿐 이어서 많은 노동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직업병을 의심하지 않아 발생보고가 늦어졌었다. 또 진단이 가능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퇴직후 수년이 경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어느 경우는 퇴직후 23년이 지난 후였다) 퇴직할 때 한번 검사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현재까지 정밀검진에서 무증독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에서 다시 검진을 통해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명이 있다. 인정기준의 변화 때문에 인정된 분도 있지만 검사결과가 이전과는 달리 나타나 인정된 분이 있기 때문에 무증독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도 지속적인 검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이황화탄소에 의한 건강장애는 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중략)

김봉환씨 죽음을 계기로 벌어진 ‘제2차 원진직업병 투쟁’의 산물로 한 차례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와같은 역학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문제는 규명되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만다고 할 수 있다.(중략)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용기준 이하라는 측정보고가 계속 되어왔고 해마다 두차례씩 시행한 특수건강검진도 서울대 역학조사가 직업병환자를 보고하기 전에는 단 한 사람의 직업병환자를 보고한 적이 없었다. 이는 기업과의 유착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기구가 노동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배제하고 진행해 온 때문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을 제대로 검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과 기구가 필요하다.(중략)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원진레이온의 문제를 닫음으로 정부와 회사는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야 할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와 기구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에 맞추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시에 꼭 필요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보존하여 그후의 검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폐업결정 전에 퇴직한 모든 노동자들이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초기의 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와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두어야 한다.

현재 이미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기구가 없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생략)

<표1>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자 현황-1993년 7월 현재

구분	접수	중독	무증독	검진중	사망자
재직후	391	146	161	64	14명 중 접수전 6명
신청자					접수후 검진전 2명
재직전	241	119	39	83	사망전 판정자 5명
신청자					사망후 판정자 1명

<표2> 연도별 직업병 발생 현황

연도	81년	87	88	89	90	91	92	93/7
판정자	1명	4	25	11	29	45	63	58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형자씨(37세, 전 부산 여중 교사)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5일 부산 놀원소극장에서 18개 단체로 구성된 「이형자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정각스님 등 4인, 이하 이형자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형자 공대위」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월 25일에 부산·경남지역 등의 18개 여성 및 인권·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결성하였다. 4일 「이형자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이형자 무죄석방 촉구의 밤」은 윤정숙·장정임 등 시인과 무용가·최은희씨 등이 참여하여 매맞는 이씨의 처절함을 묘사하는 시 낭송과 춤과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형자씨를 둘러싼 가부장제 사회의 아내구타 폐습이 이씨

를 14년간의 구타속에서 살게했고" 이를 방관하는 "현행법이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이씨를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의 판결결과가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서 2면 참조).

이씨는 14년 동안 남편의 구타 등 학대를 받아 오다가 지난 2월 21일 두달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무릎을 꿀린 상태에서 칼을 목에 대고 위협하며 온갖 수모와 폭행을 가하자 겁에 질려 남편을 밀어버렸다. 그 순간 남편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칼에 목이 절렸으며, 이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안옥희)은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 후원금을 받습니다

큼직한 충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차니다. 일간신문에서 박대당하는 인권소식을 받아보시는 즐거움, 은행으로 한번 발길 옮기는 수고로 보답해주시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제일은행 : 128-10-131017, 서준식

이근안을 검거·구속하라고 주장하였다.

이근안은 관찰뽑기, 물고문, 통닭구이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하여 79년 남민 전 사건, 80년 기자협회사건, 85년 남북어부 김성학씨 간첩조작사건, 86년 반제동맹당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씨(전국연합 총무국장)는 "이근안은 담당수사관은 아니었으나 수사실에 들려 시범을 보이면서 날개끼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했으며, 9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고문을 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근안을 확인하려 다녔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민가협은 89년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이근안을 현상수배하였고, 92년에는 300만원으로 현상금을 높여 소극적인 검·경을 대신하여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근안과 함께 김근태씨를 고문했던 백남은(57세, 전 치안본부 대공계장)을 비롯한 4명은 지난 8월 23일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된 바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증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기)가 지난달 11일부터 당직변호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회관 1층에 상황실(051-244-2600)을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단국대, 전주우석대, 강남대등 전국 6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결성한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회장 김태균 전주우석대 3년, 이하 전특련) 소속 학생 15명이 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사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진흥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 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이하 공동대위) 등 장애인 관련단체는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대위 소속단체인 「부산장애인연합회」(회장 정화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의무교육 확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MBC는 지난 달 30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년연대모임」이 주

토론회에서 이효재씨는 '정대협의 활동보고 및 유엔활동의 성과', 윤정옥씨 '일본의 1, 2차 발표 및 일본의 교과서 개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1905년 조약, 위안부문제, 강제연해, 전후보상 및 전쟁책임 등이 논의된다. 한편 이번 국제토론회에는 필리핀의 「군사적 성노예문제특별조사회」 대표, 일본의 단체 및 개별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2일에 통일원에서 방북허가를 받았다.

### ◆ 알림 ◆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자회견

- 호소카와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정대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시점에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어떤 외교적인 타협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등의 있을 예정이다.

· 일시 : 11월 5일(금) 오전 7시

· 장소 : 정대협 사무실(기독교회관 307호, 763-9633)

####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을 앞두고 양재동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 변경된 전화번호 - 상담전화 : 529-4271/3

- 사무전화 : 576-7127/8 팩스 : 576-7127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45

###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서

착하고 성실했던 한 여성의 아내구타의 누습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회생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없이 착하게 살면서도 14년간 포악한 남편에게 온갖 매질을 당했던 여성, 오직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아온 한 여성의 자신을 찌르는 남편의 칼을 피하는 사투 속에서 살아남은 죄가 살인이란 것입니다.

이형자씨는 1993년 2월 21일 저녁 8시부터 22일 새벽 2시까지 두달만에 만취하여 귀가한 남편 앞에 무릎꿇려 구타와 수모를 당하다가 칼을 들고 찌르려는 남편을 막는 과정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두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한 성실한 여성입니다. 교사가 되어서도 남달리 성실했던 이 여성은 자신이 버는 돈을 모두 남편에게 빼앗겨서 어떤 경제권도 갖지 못했고, 14년간이나 이혼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친정에 폭력을 휘둘려온 남편을 그저 용서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해도 그를 둘러싼 가부장제 사회의 아내구타 폐습은 그를 14년의 구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현행법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법정은 그가 고의적 살인을 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 6월 25일 1심 공판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무엇입니까. 그가 맷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투 속에 놓여져야 했고, 꿈에도 원한 적이 없는 살인자가 되도록 만들어 선량한 여성에게서 아이들과 직장과 명예를 빼앗아버린 가정폭력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형자씨는 당연히 무죄석방되어야 하고 그토록 성실히 노력해서 얻은 직장에 복직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공동대위는 그녀의 무죄를 확신하며 무죄석방을 요구합니다. 이형자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루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그간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나 이형자씨를 불행으로 빠뜨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 구타를 비롯한 가정폭력 범죄가 법으로 처벌되는 법의 제정도 필요합니다. 매맞는 사람들의 긴급피난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때리는 것과 맞는 것이 묵인되는 사회의 의식개조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판결결과가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줄 것을 믿으며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재판부와 우리 사회에 이형자씨의 무죄석방을 결연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3년 11월 4일

#### 이형자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각, 김용환, 김수옥, 박정향

참가단체: 부산여성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여성정책연구소,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여성의전화 등 18개 단체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SBS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 계기로

## '유서사건', PC 통해 공개토론 진행

3일, 하이텔 '토론의 광장'에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상" 개설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청자위원회'를 앞두고, 통신망을 통해서 '강기훈 유서사건'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이텔의 '토론의 광장'에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이란 토론의 주제를 내건 박상훈씨는 "SBS 방송국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하루 전날에 왜, 무엇때문에 취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2의 매스컴이라고 할 여론의 광장에서 전국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혹의 진상규명을 갈구하는 이 나라 주권자의 여론을 수렴하자"라고 주

장하고 있다.

11월 3일 개설되어, 5일 현재 20전의 의견을 올려놓고 있다. (2면 참조)

임영라씨는 "27일 SBS 편집실에서 PD협회 준비위 주최의 '시사회'를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보았다"며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어서 임씨는 "토요일(30일)에 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를 'SBS 시청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시청자위원회는 교수나 학자 등의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초(10일)에 열릴 예정이다"는 내용도 알려주고 있다.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지난 달 24일 방송될 예정

###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월 5일자(제40호) 2면 '장애인 교육권'에 관련된 기사의 10째줄과 14째줄의 '특수교육진흥법'을 '교육법'으로 바로잡습니다.

### ◆ 알립 ◆

◇ 하이텔,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상' 안내 하이텔 초기메뉴에서 12.여론광장을 선택한 후, 1.토론의 광장을 선택하시면 여러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메뉴에서 go conf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중에서 451번을 선택하시면 토론의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참가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의무교육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 일시: 11월 6일(토) 오후 2시

· 장소: 탑골공원

· 주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보·결정되었고,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굽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저버렸다" 내용의 성명서를 제택했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도 29일 성명을 내고 "유서사건프로그램이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시청자위원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면 참조).

###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민변·경실련 등 28개 사회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위' 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평화 행진을 벌인다. 대회에서는 서영훈 정사협 회장과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의의도 갖고 있다.

###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이효재 등 3인, 정대협)은 오늘 호소카와 일본수상 방한과 관련하여 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조선침략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 등을 숨지지 인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의 평화는 이루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행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 가입 등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등을 일본총리에 요구하였다.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대책위 총장에 항의서한 보내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2개 여성단체와 서울대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는 5일 김종운 서울대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진상조사와 구성과 신교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풍潮에서 밭훼

임영라(시사회를 보고, 감상문) : 문성근씨가 서류봉투를 하나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강기훈씨 글씨와 김기설씨 글씨를 복사하여 국내 유명 사설감정소에 감정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의 반응은... 그것은 말기 싫다 였다고 합니다. 이름있는 감정소 딱 한군데를 빼고는 모두 거절을 했고 할 수 없이 한곳에만 의뢰를 했는데, 결과를 통보받기로 한 바로 전날 등기속달로 모든 자료가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감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메세지와 함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경 : 이제는 판검사의 양심에 말린다. 판검사 여러분 한분만이라도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셔야죠? 이런 판결을 내리시고 잠이 오십니까? 밤마다 가위에 눌리시지 마시고 당장에 강기훈씨를 우리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김거설 : 김기설 분신 전에도 "유서대필" 수사... 김기설 분신 당시 범국민대책위원회 총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김기설 동지의 분신 전날 안동대의 김영균 열사 장례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안동대 총학생회 및 학생운동 지도부를 경찰이 비밀리 수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균의 유서를 그들이 '대필' 한 혐의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피신한 터라 강기훈처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박상훈 : 본 사건의 피고인인 강기훈씨든, 사건의 진두지휘를 맡아온 경찰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전자의 거우 '불행한 시대에 암박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외롭게 투쟁하던 운동권의 한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동료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라고 해서 형법상의 자살방조죄로 개인적인 처벌로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물론 운동권에 대한 도덕성 자체도 상당한 손상이 있겠지만), 후자라면 그 이후를 상상하는 것마저 불가능한 참담한 나라으로 우리 모두는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의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라는 훌륭한 논리로 국민의 정치적 정서와 안정을 위해 어려운 위선을 떠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개재)

### TV제작국 교양 PD 일동

#### \*문제점

1. 담당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참여나 입장개진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불방이 결정, 통보되었다.
2. 불방 결정을 외부에 알림에 있어, 마치 위 프로그램이 형평성을 잃은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인 양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3. 외압이 없었다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굽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저버렸다.

#### \*요구 및 결의사항

1. 불방된 위 프로그램은 이번 주 일요일(10월 31일) 방송되어야 한다.
2. 위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10월 27일(수) 낮 12시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3. 위 요구사항이 거부될 시, TV제작국의 교양 PD 일동은 10월 27일 12시를 기해 전원 사직한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일동

#### \*기본입장

"그것이 알고 싶다-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는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

-법원측의 권위주의적 대응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송보류 결정과정에서 담당 PD의 의견개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위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불방사태로 실추된 서울방송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자는 법원도, 검찰도, 재야도 아닌 '일반 시청자'임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소집에 대한 의견

-위 프로그램 시사를 위해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제작진과 시청자 위원들과의 공통시사 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회사와 제작진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시사 후, 수렴된 의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작진은 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방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이장형·강희철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장형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임문철 신부)과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회장 남승택 신부)은 8일 오전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씨와 강희철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면 참조).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일본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회견에서 지난 9월 20일~25일까지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와 오창래 총무, 후원모임 대표 남승택 신부 등이 일본을 방문, 당시 경찰에서 주장한 사건 관련자 등과 면담한 결과 두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형자씨 항소심 선고공판, 11일(목) 10시 부산고법.**

‘매맞는 아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이형자씨(37, 전 부산여중 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10시 부산고법 103호에서 열린다. 6월 25일 1심에서는 최저형인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남편의 폭행과 흥기 위협 등 극한적인 상황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자 무죄석방 공대위’(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명)는 지난달 25일 1만 3천여명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제판부에 제출하였고, 4일에는 부산 놀원소극장에서 ‘이형자씨 무죄석방의 법’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씨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들의 역할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경찰이 방북했다고 발표한 82년 12월 23~31일에 일본에 체류하였으며, 27일만해도 사촌 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일본 휴리마이드 스크리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씨는 82년 당시 도금공장 사장인 스크리로부터 전습생으로 초청받아 사촌 누이 이정열(55)씨 집에서 거주했었다. 84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중이다.

강씨는 지난 75년 부친이 있는 일본으로 밀항한 후 81년 불법입국으로 체류 중인 일본에서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수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가 인정돼 풀려났다. 82년부터는 부산국군통합병원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등

이같은 사실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

### ◆ 알림 ◆

-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 가족후원회가 11월 6일 이사했습니다.
- 주소 : (121-200)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협동교육연구원 1층
- 전화 : 322-4501/2
- 부산불교인권위원회가 이사했습니다.
- 주소 : (601-011)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4-4 인력빌딩 3층 부산불교자비원
- 전화 : 051-466-1680 팩스 : 051-441-2719

##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정대협(공동대표 이효재 등 3인)은 7일(일) ‘한일정상회담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대협은 이 논평에서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 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일본정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일본정부는 전쟁피해자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역사의 진실과 민중의 힘”이라며 한·일정부는 각성을 촉구했다.

### 기혹행위·성추행 안기부원 수사촉구 서한보내 윤미향씨

윤미향씨(김삼석씨 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삼석·김은주씨에게 기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8일 서울지검장에게 보냈다.

윤씨는 “문민정부에서 군사독재에서와 똑같은 밀실기록수사와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밝혔다.

##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자신의 목소리 자세히 담아

인권단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소식지가 선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공대위, 521-5364)가 ‘장애인 교육기본법(안)’ 제정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1일 <공대위 소식 1호>를 발간하여 11월 6일 8호까지 발간하였다. 또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성중, 이하 양군모, 766-8828)도 11월 8일 소식지 2호를 발간하였다.

두 단체의 소식지 모두 각 단체의 특화된 부문을 이용, 자세한 정보를 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폐시밀리전송을 주요전송 수단으로 하고 있다. ‘공대위’ 소식지는 애초에 일주일 세번 발간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고, ‘양군모’도 매주 월요일 발간하여 정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대위 소식>을 통해 일반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둘러싼 입법운동에서 정부, 야당, 공대위의 입장과 상세히 분석하여 실는 등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입법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인권·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련 교수, 교육부관련 국회 의원 등 100여곳에 보내고 있다.

<양군모 소식>은 인권단체와 주요 20여 대학 총장실 등 190곳에 보내 출소 청년양심수들의 징집문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씨 간첩고문조작 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1. 남승택 신부, 최병모 변호사, 오창래 가톨릭인권위원회 총무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온다. 이장형씨와 강희철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씨의 경우 방일 경위와 그곳의 생활을 주로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들의 역할이 전혀 사실무근이었음. 특히 82년 12월 23일~31일까지 이장형씨가 방북을 했다고 나타났으나 그 기간에 일본에 체류했음. 27일 경우만 하더라도 사촌누이 이정열과 사업을 논의하던 휴리마이드 스크리 사장과 연말인사 자리와 함께 함.

3. 강희철씨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출신으로 현재 간첩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음. 그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나와 1975년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1981년 2월 오사카 소재 부천역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전거로 귀가중 일본경찰의 불법검문에 걸려 81년 7월 한국에 송환됨. 송환 즉시 부산 괴정동 보안대 수사실에서 3박 4일간 전기고문 등 혹독한 심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음.

4. 그후 강희철씨는 86년 4월 조천면 신촌리 신혼 살림방에서 제주경찰청 대공수사관들에게 불법연행되어 제주시 광양로타리 서쪽에 위치한 대공분실 2층에 있는 천정과 사방이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된 취조실에서 장장 105일간 고00, 김00, 진00, 현00 등 8명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물고문, 잠안, 재우기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됨. 심지어 그들은 80살이 넘는 조모까지 취조실에 불러다놓고 온갖 폭언과 수모를 안겨 주는 폐륜적 만행을 저지를.

5. 취조결과 드러난 간첩혐의 제주도 관공서 위치에 대하여; 제주시에 제주도청, 북군청, 경찰국, 법원, 제주시청, 제주경찰서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다.

6. 도내 중요기관에 관하여; 제주시에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제주대학, 실업전문대학, 간호전문학교, 오현고, 제주상고, 제주일고, 제주농고, 제주여상고, 제주신고, 제주여고, 제중중, 제주일중, 제주신중, 제주여중 등이 있다. 동 도내 중학생이면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로서 기밀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임.

7. 특히 강희철씨가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그후 활동을 지원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강희철씨 고교 동창인 전성광씨는 강희철씨를 재학시절이나 그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친분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

8.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 이 사건은 민족분단이라는 상황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특진과 포상을 미끼로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임.

1993년 11월 8일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주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 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원진직업병 환자 치료대책, 재취업, 전문병원 설립 등을 둘러싸고 5년여동안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온 원진레이온 문제가 합의되었음에도 술안 미해결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원진비상대책위 활동환(34) 위원장의 2명과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기획관리실장과 법정관리은행인 산업은행 황병호 부총재 등의 입회 아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는 “폐업위로금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2백5십만원의 취업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지급, 회사가 150여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 참조).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채용 때 동일조건일 경우 원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4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원진비대위에서 발행하는 <원진신문>의 한 실무자는 “이번 합의서는 직업병검진과 치료대책 그리고 재취업대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미완의 것이어서 결코 이번 합의로 원진직업병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며 제2, 제3의 합의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재취업을 앞선노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7월 30일에 노동부가 ‘정부투자기관에 책임있고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거주지인 구리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안산, 충북 청주 등에 취업을 앞선, 결국 1명도 재취업을 못했다”고 밝히면서, “노동부의 취업앞선 노력은 말 그대로 ‘노력’일 뿐”이라고 회의를 표시하였다. 회사가 정기건강진단비로 1백2

십여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지금까지 취업을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비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여 앞으로 정기검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진지원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원진직업병, 즉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서서히 증세가 발전하는 진행성 직업병”이라고 원진직업병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합의서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로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하여 치료하겠다는 것은 언제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발병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 6공 수험생활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서울 등 전국 7곳, 병무청 앞 동시집회 가져

‘양심수의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양군모’), 대표 김정훈, 26, 서울대 졸, 실형 2년 2개월)에서는 11월 9일 2시부터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국방부와 병무청을 방문하여, 양심수들의 부당징집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는 50여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방부 앞에서 1시간동안 시위를 하다, 병무청으로 옮겨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그동안 잘 견디어주던 사랑방의 복사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사랑방을 지탱해줄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또 “노동부의 산재종합병원 설립시기도 언제인지 분명치 않다”며 노동부와 회사의 태도에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합의서에는 “회사, 노동자간의 이견이 생길 때에는 회사의 해석에 따른다”, “관련법규의 착오, 해석의 오류 등 이유를 막론하고 임금 등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폐업위로금의 지급으로 청산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지난 10월 23일 원진결의대회 이후 원진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등의 위협이 있었다며 “이번 합의서는 독재시대의 유산인 원진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려 회사측의 의도대로 밀어부친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용을 이미 부담한 자에게는 전 I-2(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은 지금 하지 아니한다.

### IV. 직업병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5. 기금출연의 목적, 기준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 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점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후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로 확정됨으로써 자활할 수 없는 근로자를 돋기 위하여 회사는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한다.

② 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기금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③ 본합의의 현재 민사배상등급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합의의 이후에 발생하는 민사배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익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6. 기금의 출연방법

① 공익법인의 설립, 기금의 출연 폐업후 발생하는 직업병확정자의 민사배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노동부 허가)을 전제로 동법인에 대하여 다음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한다.

가. 1차: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50억원  
나. 2차: 파산체권 50억원  
다. 3차: 파산종결 후 임여재산 발생 시 50억원 이내

② 공익법인은 우선 회사에서 설립 추진토록 하되 법인설립(노동부 허가) 이후 법인입원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대위측과 협의하여 법인입원을 교체하기로 한다.

#### V. 기타

7. 고소, 고발 등의 취하  
본합의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본합의 이전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또는 행정법규 등에 정한 책임은 서로 묻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합의 이전에 발생한 진정·고소·고발 등은 본합의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기관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8.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  
① 본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을 폐업위로금 수령 시 제출하기로 하고, 본인의 부주의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② 본합의에 따른 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에 근로자는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하고, 본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의 수령을 위한 경우 이외의 근로자는 즉시 회사내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대표 및 당사자가 부담한다.

#### 9. 효력

① 본합의서는 합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관련법규의 착오, 해석의 오류,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는 본합의에 의한 폐업위로금의 지급으로서 당연히 청산된 것으로 한다.

③ 본합의에 따라 1988년 9월 14일자 ‘회사와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간의 합의서’, 1989년 8월 10일자 ‘회사와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간의 보충합의서’, 1990년 5월 31일자 ‘회사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업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간의 합의서’, 1990년 12월 31일자 ‘단체협약서’, 기타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합의서 등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④ 회사와 근로자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1993년 11월 9일

회사: 원진레이온(주) 대표이사 전덕순  
근로자: 원진레이온(주) 노동조합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활동환  
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신현태  
대의원 겸 비상대책위원장 배기수

#### 일회인

일회인은 각자 본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임의단체를 포함한다)를 대표하여 본합의사항을 확인하며, 각 기관 또는 단체가 상기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하기로 하고 각각 기명날인한다.

노동부: 우성(기획관리실장)  
한국산업은행: 황병호(부총재)  
비상대책위원: 정기환, 김정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사·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10일 오전 15개 노동단체 · 100여명 노동운동가 대표 기자회견

김금수, 김문수, 안재환씨 등 노동운동가 100명과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 협의회」 등 15개 노동단체를 대표하여 김금수, 한경남, 정인숙씨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달 2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채택된 「노·사·정 공동합의문」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와 의무이행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사·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 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

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촉구하였다.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씨(23세, 사회교육 4)

지난 9월 8일 광주교대생 이경동씨 분신자살에 이어 같은 학교 한상용씨(23, 사회교육 4)가 10일 오전 10시 10분께 광주교대 학생회관 3층 옥상에서 분신한 채 10m 아래로 투신, 전남 대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만에 숨졌다.

한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산하 ‘4학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머물며, 김영삼 대통령, 학교 학생과 총장 그리고 전국 교대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써놓았다.

한씨가 분신한 광주교대

또 이들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노·사·정 공동합의가 94년 임금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조합원 대중의 절실했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학생들은 10일 ‘교원수 5년간 동결 철회, 교원의 안정적 수급 해결, 현 임용고시 철폐와 올바른 임용제도 마련, 교육재정 5% 확보’ 등을 내걸고 8

일째 수업거부 중이었다. 한씨는 대통령에 쓴 유서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건 분명히 집단

### ◆ 알림 ◆

#### □ 민가협 목요집회

-사상·양심의 자유보장과 그로 인해 갇힌 양심수 석방

북한방문으로 구속된 소설가 황석영씨 사건, 사노맹 사건의 시인 박노해, 사회과학연구원 사건의 조국 교수 등의 사례가 발표된다.

·일시 : 11월 11일(목) 오후 2시~3시  
·장소 : 종로3가 탑골공원

#### □ 전해투, 병역특례문제 해결 위해 병무청 항의방문

전해투는 11일 오전 11시 병무청장과 만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개최예정인 공청회에 병무청측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잘 견디어주던 복사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탱해줄 복사기를  
기증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쓰던 복사기도 환영합니다.>

이기주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몇몇 한 참교사로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어르신,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시고, 개혁의 의지를 담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전국특수교육과연합’ 소속학생 10여명이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관련 악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0일 현재 일주일째 농성중이다. 단식 일주일째를 맞아 농성대표인 김국현(대구대3)씨 등 2명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풀었으며, 지난 6일 범국민결의대회를 마치고 장우성(수화동아리 연합회 회장)씨 등이 새로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농성단은 지난 8일부터 하루 7시간 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단체탐방·3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방 배역에서 내려 두어번 골목을 돌아서니 눈에 띠는 깔끔한 건물, ‘제5기 장애우 대학’을 알리는 포스터가 계단에서부터 맞아준다. 담금질(MT)로 시작하여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포스터에 빽빽히 차 있다.

그리고 한눈

에 들어오는 말! 장애우? 장애우라… 장애인보다는 친근하게 느껴지는 말인데 더 깊은 속뜻이 있을 것 같다. 마감을 앞둔 편집국처럼 여러 사람의 열기가 후끈거리고 있고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듯 『함께걸음』의 합본호들이 벽을 둘러 놓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함께걸음』은 장애우문제를 다루는 전문지로서 매월 나오고 있는 장애우들의 대변지이다.

‘장애인’란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는지부터 알아본다. 보통 장애인이나 장애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장애우와 비장애인은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관련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만든 말이다.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본인이 장애인인 이성재변호사를 중심으로 장애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소모임 속에서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일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87년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사진과 연구위원, 편집위원은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맡고 있으며, 실무는 김정열 실장과 여러 명의 간사와 편집부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간 6번의 이사를 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지난 기간의 어려움을 짚게 말하는 김 실장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내내 얼굴에 미소를 띤다. 실장 자신이 87년부터

계속 이곳에 몸담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장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이 해온 일은 참으로 많다.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위해서 88-8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 고용 촉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책위원회의 사무국도 겸하고 있어 행정처리 등 많은 힘을 쏟으면서 ‘공대위 소식’을 일주일에 3차례 발행하고 있

다. ‘소식지’를 통해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장애인 의무교육 보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김 실장은 장애인들의 현안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상정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교육법 98조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시키고, “장애인은 만3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꼭 신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론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해도 연구소에서는 이후에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과 교육내용, 교사확보 문제 등 연구할 일은 너무 많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 방배역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린다.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솜씨좋 구경하세요.” 때마침 카드장사들이 벌써 좋은 판에는 장애고아들이 그렸다는 카드속에서 널을 뛰고 연을 날리는 그림이 활짝 웃고 있다.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란 참고운 것, 색동저고리 끝이 스칠듯이 널을 뛰며 웃는 그림속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만든 장애우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정신대 자료집 IV』 발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법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자료집은 92년 12월 12일 ‘반 보벤 초청 세미나’, 자료와 93년 7월 5일 ‘국제법 공청회’,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박원순> /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부 입장의 문제점 <배금자> / 일본의 책임이행 방안<정인섭> / 중대한 인권침해의 회생자에 대한 배상<데오 반 보벤> /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와 유엔-중대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해결방식의 제안<예즈로 도초카> 등 가격 : 4,000원 구입문의 : 763-9633(정대협)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부산고법, 이형자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11일 오전 9시 30분 예정 보다 30분 먼저 시작한 남 편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자씨(37세)에 대한 항 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고 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 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 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참작하여 1심 선고량보다 1년을 낮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 결성되어 이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이형자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각 스님 등 4인)

미 하원의원 24명 일본에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서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해야"

지난 11월 3일 미국 하원 의원 24명이 일본 호소카와 총리에게 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1일 정대협이 밝혔다.

하원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정부가 2차대전시 수용소에 감금한 일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한 것처럼, 일본정부도 군위안소에서 강제적으로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위와

는 재판부가 여전히 매맞는 아내의 인권보호를 의연하고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지난 달 25일에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전국에서 받은 1만 3천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선고를 앞둔 지난주 11월 4일에는 '이형자씨 무죄석방 촉구의 밤' 행사를 여는 등 그동안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 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 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훈사건' 방영 불투명  
sbs 시청자위원회 심의안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려던 「강기훈유서 대필사건-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 여부를 결정할 시청자위원회가 10일 열려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만 하고 「강기훈」 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앞으로 방영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sbs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기훈프로그램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예 논의조차 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직되면 제대조치하겠다"  
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에 대한 입장 밝혀  
11일 병무청 직무국장은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되면 3년 이상인 자는 제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사업주 측의 입장이 강경하여 병역기피로 수배가 된 14명의 병역특례자의 문제 해결은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이 많다.

민가협 7차 목요집회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목요집회」를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 교수, 북한을 방문한 소설가 황석영씨, 「사노맹」 관련자 박노해씨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전화 : 764-0203, 744-3717 팩스 : 744-6189)

제7회 인권상 후보 추천 안내

올해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마감 : 11월 16일  
·추천 대상: 개인이나 단체(추천 이유 첨부)  
·수상자 발표 :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  
·역대 인권상 수상자 : 87년 오연상박사 / 88년 이명숙씨 / 89년 북미주인권연합 / 90년 윤석양씨 / 91년 강경대씨 가족 / 92년 한준수군수

## 변론요지서(일부 게재)

죄명 : 살인 피고인 : 이형자

1. 사건정황(생략)
2. 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위(생략)
3.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가.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계속 극심한 폭행에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가 칼날을 자기 목에 들이대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들어 두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밀어부쳐 그의 목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칼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빼앗아 다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등을 수회 휘둘러 사망하게 하였다

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때와 달랐음은 위에서 누누이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실제로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나 피해자의 행동과 표출한 태도가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이상 정당방위의 상황을 인정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라.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극심한 폭행에 시달렸으니 상대방에게 증오감을 품었을 것이고, 그 증오감이 살의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식의 추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폭력의 구조와 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실리상태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의 폭력 앞에서는 상대를 증오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는 견갑을 수 없는 공포로 나약해지고 비굴해져서 증오조차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위의사 속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분노, 복수심 등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떠밀어 칼에 찔리게 하였을 때 살의가 있었느냐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때 살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연이어 살인행위를 계속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마. 1심 판결은 피고인이 당하고 있던 위치의 상황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절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계속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였더라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는 상황을 적절 겪지 아니한 사

람의 사후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적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4. 정상

가. 남편의 가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못한 아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남편이 잠든 틈이나 술에 취한 몸을 이용하여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을 한번씩 보게 됩니다. 비록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학대상황이 인정되면 오죽하면 그랬으라는 동정을 받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으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도 가혹한 학대상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자하였다는 양상 때문에 그려한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편견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비교하는 사건들이 어떻든 모살인데 비하여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구타정도로만 그쳤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의 부상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가해의 기도를 멈추기라도 했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난자행위란 처음의 가해행위가 물고오는 엄청난 공포로 인하여 정신없이 되풀이되는 관성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자행위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의 죄질을 달리 본다면 이야기로 인간의 행위를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하 생략)

1993. 11.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그동안 잘 견디어주던 복사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탱해줄 복사기를  
기증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쓰던 복사기도 환영합니다>

일본총리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미국 하원의원

Benjamin A. Gilman	Constance A. Mcrella
David E. Bonior	Don Edwards
Edward J. Markey	Gary F. Ackerman
Jan Meyers	Josy E. Serrano
Leslie L. Byrne	Meil Abercrombie
Michael J. Kopitski	Nancy Pelosi
Norman Y. Mineta	Patsy T. Nink
Raren L. Tkurman	Reter T. King
Robert A. Underwood	Robert T. Matsui
Ronald Belloms	Ronald K. Macitley
Susan Molinari	Tom Lanters
William Jeferson	William Kushes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단으로 Clare McVey씨와 Pierre Robert씨가 지난 1일 입국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표단은 13일동안 민가협, 민변 등의 인권단체와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현황을 들었으며, 강기훈공대위, 문국진을 위한 모임 등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조사하였고, 김삼석씨·조국교수·사노병등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을 만났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목적은 우선 김영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약

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

20일 출국 예정인 이들 대표단은 앞으로 박노해씨 가족 등 몇몇 가족들과 정부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16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 기간동안 조사한 한국 인권상황과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대표단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창설되어 인권옹호를 위한 전세계적 운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양심수의 석방,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 고문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비사법처형과 '실종' 문제 근절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70여 개국에 12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77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2면 참조).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구속 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합동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박창수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

정대협 대표, 평양토론회 참가 기자회견 13일 1시

이효재·윤정옥 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11월 7일, 8일에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보고 기자회견을 13일 1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274-2883)에서 가진다.

###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

지난 11월 4일부터 '장애인의 의무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이던 전국특수교육학과 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은 12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 광주교대생 장례식 치뤄

'교원정원 동결철회' '교육재정 확보' 등을 주장하며 10일 분신했던 광주교대 한상용씨(23, 사회교육과 4)에 대한 장례식이 12일 광주교대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장지는 망월동 5.18묘역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전화: 764-0203, 744-3717 팩스: 744-6189)

### 제7회 인권상 후보 추천 안내

- 추천 마감: 11월 16일
- 추천 대상: 개인이나 단체(추천 이유 첨부)
- 수상자 발표: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
- 역대 인권상 수상자: 87년 오연상박사 / 88년 이명식씨 / 89년 북미주인권연합 / 90년 윤석양씨 / 91년 강경대씨 가족 / 92년 한준수군수

그동안 잘 견디어주던 복사기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탱해줄 복사기를  
기증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쓰던 복사기도 환영합니다>

##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편집자주: 1993년 간행된 「앰네스티 정신, 앰네스티 운동」, <제6장 앰네스티 조직과 구조 '21세기를 위하여'>를 읽길 것이다. 또 한 앰네스티의 가장 상징적인 활동인 긴급구명활동을 소개한다.

### 1. 기원

앰네스티는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씨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는 두 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이 자유를 위한 죽음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포르투갈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항의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적 수인들의 운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와 다른 활동가들이 1년동안 '사면을 탄원, 1961'이라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이 캠페인은 1961년 5월 28일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잊혀진 양심수"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 기고문은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감된 전세계 수인들의 석방을 위해,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탄원을 벌이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수감자들을 '양심수'라고 불러 이후 국제적인 어휘가 되었다.

이 기고문이 나간 뒤 1달만에 천명 이상의 독자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또한 다른 양심수의 사례를 신고해 왔다.

베넨슨씨의 주장이 많은 사람의지를 받게 되자 6개월 후 캠페인 활동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단순한 폭로를 위한 노력으로 시작한 일이 영구적인 국제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앰네스티의 시작이었다.

### 2. 창설과 성장

1년내에 이 새로운 조직은 4개국에 대표를 보내어 양심수를 위한 대변단체를 만들고 210건의 사례를 다퍼었다.

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수임사항을 점차로 확대하여 공정한 재판의 요구와 고문반대 그리고 모든 수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모든 경우의 사형을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비사법처형과 '실종'까지 같은 입장을 확대하였다.

1977년 앰네스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운동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3. 오늘날의 앰네스티

1990년대에 이르러 뼈만이 훨씬 넘는 회원, 지지자, 정기적 후원자들이 150개 국가에서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수만의 사람들이 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망에 참여하고 있고, 6천개 이상의 앰네스티 그룹들이 전세계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앰네스티는 수천에 이르는 인권침해 회생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탄원을 보내고 있고, 자료조사와 재판감시 혹은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을 위해 대수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매년 국제기관에 대표단을 보내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해오고 있다.

앰네스티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금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캠페인 프로그램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예수의 기금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대중기금조성사업을 기획한다.

##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이란?

앰네스티에서 벌이는 가장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활동방식이 바로 긴급구명 활동이다. 앰네스티는 77년 "모욕적인 처우, 폭력과 고문에 항거하여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의 기초,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기초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공현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앰네스티가 벌이는 긴급구명활동은 인권침해의 위기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활동장을 구축한 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활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1. 긴급구명활동의 관심대상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의 경우

-합법적인 사형제도 또는 '비사법 처형'에 의해 생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정치적 망명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실종, 정치적 살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긴급구명활동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앰네스티 국제사무국내의 조사팀이 세계 도처에서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정보를 주의깊게 점검하고, 앰네스티의 활동사항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사례는 한장의 '긴급구명활동'이란 서신으로 작성되어 Fax, 텔레스, 전자우편 및 항공우편으로 신속하게 각 나라의 지부로 보내지고, 지부는 즉시 모든 긴급구명활동 참가자들에게 발송한다. 각 지부의 참가자들은 가능한 방법 즉 우편, 팩스, 텔레스, 전자우편 등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 대표자에게 항의, 촉구 서한을 발송한다.

### 3. 긴급구명활동의 성과

매년 채택된 2000~3000사례 중 1/3이상이 사형수의 감형, 실종자의 행방확인, 고문 중지, 수감자의 석방, 의료검진의 제공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답신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최초의 긴급구명활동은 1973년 3월 19일 브라질의 Luiz Basilio Rossi 교수가 대상이었다. 이 이후 5만명 이상의 편지쓰기 참가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수천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수백만통의 항공우편과 텔레스, 팩스와 전보 등을 보내고 있다.

1973년 이래 20년이 된 긴급구명활동은 전세계적인 활동망의 광창과 발전된 컴퓨터 기술의 적용 등으로 많은 변화를 했다. 현재 80여개국의 긴급구명활동 참가자가 있으며, 국제적인 긴급구명활동망은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소속 학생과 청년들은 15일 5시경부터 민주당사에서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양군모」 소속 회원 100여명은 오후 2시 여의도 민자당사 앞에서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임사빈 민원실장과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을 만나 민자당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양군모는 지난 84년과 88년에도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어 정부여당의 해결의지를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임채정·신계륜 민주당 의원의 530여 시국관련 구속학생들의 징집문제에 관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한 서면답변에

서 “현재 이와 관련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11월 말경에 있을 국방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서수종, 위원: 꽈영달, 윤태균, 임복진, 강창성)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정치적 이용 「양군모」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은 역대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국제 앤네스티 아시아 지역 조사관 피에르 로베르·클레어 맥베이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

요하는 관행, 안기부·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등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이들 조사원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4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해제되었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총무)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 10명이 참석하였다.

### ◇ 알림 ◇

□ AI, “한국 인권상황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1시 토알호텔 2층 서울룸  
□ 이공순기자 선고공판  
·10시, 형사지법 424호.

### 오늘은 1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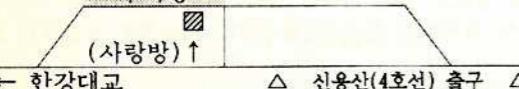
「인권운동 사랑방」이 조출한  
집들이를 마련합니다.

·일시 : 93년 11월 20일(토) 3시  
(저녁시간까지 뒷풀이가 있습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사무실(기원빌딩 5층)  
(1층 COFFEE TIME, 4층 대성전기학원)

용산역(국철) 용산역(1호선)

용산역 광장

주차장



행형실태조사를 위한 수형경험자의 협조를 구합니다.

본인은 현재 행형제도를 연구하면서 행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행형제도의 개선안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먼저 수형생활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체험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인과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생생한 체험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정리하여 충실히 행형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박찬운 법률사무소  
(전화 : 525-2251/2 팩스 : 525-2252)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세정부 출범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지난 1일 방한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조사해왔던 국제 앤네스티 국제사무국 대표단인 클레어 맥베이, 피에르 로버트씨는 16일 오후 1시 명동로 암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 정부 출범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왔으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이젠 한국의 인권상황도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세계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역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년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며, “세정부가 출범 후에도 작년 유엔인권 이사회가 지적한 국보법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20시간 가량 폐쇄되었던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통신망 이용자들은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기부의 태도에

이내창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무죄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택판사는 16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면 참조).

제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이 상당하여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지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40여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의 문제를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2면 참조).

김씨는 “안기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이미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서적에서 뽑은 사노맹 관련 글로써 동호회 회원들 대부분이 그 글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방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개재한 동호회 글을 보고 안기부와 시경에서 천리안 측에 ‘동호회’ 회원들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천리안 측에서 거부하고 ‘동호회’를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년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며, “세정부가 출범 후에도 작년 유엔인권 이사회가 지적한 국보법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20시간 가량 폐쇄되었던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통신망 이용자들은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기부의 태도에

지난 14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추모식이 700여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참석자들은 88년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종면군의 묘지관리비를 모금, 2003년까지 미리 냈다.

행형실태조사를 위한 수형경험자의 협조를 구합니다.

본인은 현재 행형제도를 연구하면서 행형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행형제도의 개선안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먼저 수형생활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체험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정리하여 충실히 행형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박찬운 법률사무소  
(전화 : 525-2251/2 팩스 : 525-2252)

### 이내창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남녀 1명씩과 동행중인 것을 보았다는 덕성호 선장 이현우와 삼호다방 종업원 최희는 처음에 위 동행한 남녀가 백승희와 도연주인 것처럼 말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반면, 도연주와 백승희는 이내창이 서로도 전녀가 변사할 때까지의 시간 무렵에 마중나온 서동수·박재우와 함께 거문리에 있는 영국군 묘소를 들려보고 근처 해변에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인 바, 그때 찍었다는 사진 1매와 서동수·박재우·박충운 이난희 등 위 도연주·백승희와 그날 이후 이를간 어울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내창이 변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위 도연주·백승희의 알리바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안기부 인천분실의 타자수에 불과한 도연주를 수사나 정보와 관련하여 고도로 훈련된 안기부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는 ‘안기부 요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안기부가 이내창의 사망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 위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뒤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이내창의 사망에 도연주 등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데다가 한겨레신문이 사회에 영향력을 있고 책임있는 유력 일간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이를 위 신문에 보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기사내용이 임수경의 방복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이내창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른 것인 이상 위 기사를 보도한 주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연주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다수)이고 학설의 주류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무렵은 임수경의 방복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던 점, 이내창은 전대협 소속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서 변사 직전인 89년 8월 14일 오후에 총장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8월 15일에는 각종 행사를 주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나 편지도 남기지 않은 채 8월 14일 오후에 안성의 자취집에서 들연 사라진 뒤 그 다음날 아무 연고도 없는 거문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점, 이내창이 변사 직전에 남녀 1명씩과 동행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그 남녀의 신원을 파악하던 중 여수발 거문도행 신영훼리호의 승선자 명부에 학생 신분으로 기재된 도연주, 백승희의 이름이 이내창의 이름에 연이어 기재되어 있어 위 양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던 점, 그후 도연주와 백승희가 나타나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중 도연주는 안기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내창의 사망 직전 목격자인 이현우와 최희는 처음에는 위 백승희와 도연주가 이내창과 동행했던 바로 그 남녀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그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그 진술번복 경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위 도연주와 백승희는 원래 8월 15일 07:00에 여수를 출발하는 폐속정인 타코마호 표를 예매하고서도 웬일인지 한시간 후에 출발하는 신영훼리호로 배편을 바꿈으로써 이내창과 같은 배를 타고 거문도에 가게 된 것으로 밝혀진 점, 이내창의 사인에 관하여 의사인 것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부검에 관여한 중앙대 장임원교수는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 백승희와 도연주를 이내창의 변사직전에 동행한 남녀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봄이 상당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 김희태 판사

###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박지현(안기부는 실사 안하나?)~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김대통령은 뭐하시나요? 안기부 제대로 됐나 실사해야 합니다.

· 김경오(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 아래 목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이제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도 움츠려들고 행동도 움츠려들면 우리나라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할 말은 많은데 더이상 못쓰겠다.

· 최세진(이런 날도 안되는 일이)~분명 문민정부는 안기부의 축소와 국내에서의 정보활동을 줄인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탄압을 시작하는군요.

· 임원길(‘안기부’ 통신계 침입)~안기부는 천리안에 있는 ‘현대철학동우회’에 몇몇 비판적인 글을 문제삼아 천리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현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주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며 오히려 더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씨는 이원 상태로 방치되다가 검찰 송치후 20여일만에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문씨는 지금까지 고문후유증으로 6차례에 걸쳐 3-6개월간씩 입원을 했고, 현재도 고려대 병원에 입원중이다.

또한 문국진씨를 치료한 동교신경정신과 배기영 박사는 문국진씨의 경우 ‘고문후유증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회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백만원 이하의 차수금으로 조력을 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전화 : 062-222-0280)

### ◆ 알림 ◆

-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 단체탐방·4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여성단체연합의 긍지금지한 단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2층에 자리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동요데이트, 애기책,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책들이 촘촘히

차 있고, 무엇보다도 모성의 따뜻함과 교육자의 위엄으로 둘둘 뭉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이 ‘탁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탁아는 일관된 행정에 의해서 올바른 목적과 체계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서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맞벌이부부 증가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탁아가 부부만의 책임, 특히 모성의 책임일 수만은 없으며 사회의 모순과 맞물리는 문제로서 부각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세상등이의 죽음’ 등 잇단 아동들의 회생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함을 느낀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85년 지역사회아동교사회, 87년 2월 지역사회탁아실무자연합회를 거쳐, 같은 해 6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확대개편되었다.

지탁연은 전국의 80여개 비영리 민간탁아소(교사수는 230여명)를 회원으로 하여, 지역에는 각 탁아소들이 인근 지역의 탁아소들과 ‘지역위원회’, 본부에는 지역대표자회의와 사무국이 있다. 본부에는 회장·사무국장 1인, 상근간사 2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탁아소에서 1년 이상의 활동을 한 후 본부에서 활동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 활동에 다시 참여한다.

정부보다 앞서 탁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탁아’라는 용어도 이들이 먼저 사용하였다. 탁아는 ‘단순히 맡겨서 키운다’는 의미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탁아소는 그냥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아동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탁아시설이 국공립, 직장, 민간운영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역탁연을 구성하는 탁아소가 이들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탁연의 탁아소는 원장체계가 아

니라 교사와 부모에 의한 ‘공동운영 체계’이며, ‘비영리’이다. 가정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놀이방이나 영리수단으로

을 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목표이며, 아이들뿐 아니라 자모회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님들로 하여금 탁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그간 이들은 “정류장수만큼 탁아소를” 이란 구호(?) 아래 양적확대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 제대로 된 법적 틀거리가 없었던 탁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래서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전통풀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주요성과이면서도 지금도 이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의 질에 별이부부로서 한명은 생산직 노동자되어야 하며, 자영업인 경우는 10-20% 정도내에서 전발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노동시간과 일치하게끔 시간을 운영하므로 교사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 된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 부모님의 직업을 존중하게 하는 교육, 여성·남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교육,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1.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결의한다.
2. 고등판무관은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 a. 모든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 b. 지역내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선거를 지원하고 발전적 활동을 하는 다른 분야 유엔활동과 유엔체계내 인권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적절한 기관의 요청에 부합하여 조정한다.
  - c. 인권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자문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한다.
  - d. 유엔의 인권교육사업 및 대중적 정보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조정한다.
  - e. 인권센터의 온전한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국장에 의해 행하여지는 기능을 돋고 매일매일 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f.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부과된 책임과 수임사항들을 수행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전문기구들 및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에 권고사항을 이관하는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
4. 고등판무관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정부와 접촉하고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 사실을 파악하는 특사를 급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결의한다.
5. 다음 사항과 같이 고등판무관에 대해 결의한다.
  - a. 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되고, 1994년을 시작으로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b. 사무총장 아래에서 적절한 지위를 갖는다.
  - c. 사무총장은 고등판무관이 위에 명시한 수임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재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d. 고등판무관에게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활동을 해마다 보고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강화와 전의사항의 체택을 고려하도록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

지탁연의 탁아소는 원장체계가 아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주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소속 정형기(기아자동차 해고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달 26일 국회앞 지하도 입구를 걸어가는 도중 경찰에게 기습을 당해 강제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온몸을 군화발로 짓밟는 등의 집단폭력, \*강제연행 사과요구에 발과 무릎으로 허리를 무자별 가격하여 고소인 정형기씨 등 3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달 26일 국회앞 지하도 입구를 걸어가는 도중 경찰에게 기습을 당해 강제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온

몸을 군화발로 짓밟는 등의 집단폭력, \*강제연행 사과요구에 발과 무릎으로 허리를 무자별 가격하여 고소인 정형기씨 등 3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KNO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는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를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인권상시상분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 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 낡은 국보법, 점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기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데이콤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게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

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야제전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항의하고 있다.

문국진씨 소송대리인인 배승현 변호사가 문국진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네 배기영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

「인권운동 사랑방」이 조출한  
집들이를 마련합니다.

·일시 : 93년 11월 20일(토) 3시

(저녁시간까지 뒷풀이가 있습니다)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사무실(기원빌딩 5층)  
(1층 COFFEE TIME, 4층 대성전기학원)

용산역(국철) 용산역(1호선)

용산역 광장

주차장

(사랑방) ↑

← 한강대교

△ 신용산(4호선) 출구 △

**형사법정운영표준례****1. 기본원칙****가. 법정운영의 기본**

(1) 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 불필요한 권리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 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2)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다만 미성년의 피고인 등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 재판장이 권리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공분을 원인으로 하여서라도 피고인이나 증인을 감정적으로 질책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언어사용이나 태도는 피한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그저 피고인 아무개라고 호칭할 것이고 피고인 아무개씨, 아무개 교수·사장 등으로 호칭하여서는 안되고, 변호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아무개라고 호칭하도록 한다.

(5)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품위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적절히 제지한다.

**다. 법정에서의 구속해제에 대하여**

(1) 법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을 모두 풀어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신체구속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재판장은 구속해제에 따른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단위의 시차제 실시

-특별기일의 활용

-사건진행순서의 조정(문제사건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등)

-사건진행순서의 예고(정리를 통하여 교도관에게 예고하고 준비시킴)

-청원경찰·비상대기인력의 활용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한다.

**라. 시차제 소환에 관하여**

(1) 재판기일은 1시간 단위로 지정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및 관련방청객 등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하

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2) 지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여 그 다음 시장대의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해당사건은 당일 마지막에 심리하거나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증인 등이 있는 때에는 시간을 지킨 다른 소송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임을 알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판진행절차****가. 모두절차**

(1) 인정신문 : 피고인을 앉힌 상태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사항을 묻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한다.

(2)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간략하게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모두진술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도 있다.

(4) 진술거부권의 고지 : 매 사건마다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나. 사실심리절차**

(1) 국선변호인 불출석의 경우 : 원칙적으로 연기되어 연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증인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신문 : 검사나 변

호인은 앉아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증거조사절차**

(1) 합의부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체부결정 : 판사 3인의 합의로 결정한다.

(2)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의 고지 : 위증의 벌의 경고는 선서전에 행하고, 친족관계로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한다.

(3) 증인선서의 방식 : 선서는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시행하되 1건 수명인 경우에는 대표로 1인에 대해서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서시 증인만 기립한 채 오른팔을 들고 선서하도록 한다.

(4) 강간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조사 : 해당사건에 대한 기일을 방청객이 비교적 적은 오후 4, 5시 이후로 지정하여 신문하도록 하고, 증인의 의사를 물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라. 종결절차  
검사의 의견구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앉아서 진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고절차**

(1) 판결의 선고 : 사건 단위별로 피고인을 입정시켜 피고인을 앉힌 상태에서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소기간 등의 고지 : 매 사건마다 상소기간 등을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 알림 ◆**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36호(93년 11/12월, 격월) 발행

발행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전화 393-4662)

주요내용 : 오늘의 인권·이방인의 슬픔·재미동포 유계해서 실종사건 현지답사보고서 / 인권개시판·우리사회의 용달, 노동자의 삶, 등 100쪽.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정』 발간/ 서울변협 행정제도 연구소

주요내용 : 제1부(논문)-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운)/국제인권법의 성립과 계보 및 효력(김선수)

제2부(자료)-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유럽형사시설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 302쪽

· 역사비평사 발행, 값 : 7,500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작한 성폭력예방 교육용 비디오 「소중한 내 몸 내가 지켜요」 시사회와 어린이 성폭력 문제 토론회가 열린다.

· 일시 : 93년 11월 19일(금) 오후 2시~4시

· 장소 : 인켈아트홀(전화 741-0251) ·문의 : 전화 576-7127, 8(상담소)

· 1부 :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최영애) / 공개토론

· 2부 : 「소중한 내 몸 내가 지켜요」 시사회

**◆ 재판안내 ◆**

·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함소10부, 318호 10시.

·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장애인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안 워크샵을 가졌다.

11월 25일 국회 교체위 주최로 열릴 「장애인교육에 관한 공청회」에 윤점통(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이남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며 따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제98조의 완전삭제와 조기의무교육 실시, 그리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법안내용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참가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고 정부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해 97년까지 특수교육의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알림 ◆**

□ 유가족협의회 신임 사무국장에 백증수씨(33세) 임명  
· 경력 : 박영진 추모사업회, 민통련 사회국, 서민련, 사민청 등에서 활동. 86년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주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 3권 쟁취" 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 <그것이 알고 싶다>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증계(근로자 파견법안의 문재점, 외국의 근로자 파견제도, 근로자 파견법안 전문)

용산역(국철) 용산역(1호선)

용산역 광장

주차장

(사랑방) ↑

← 한강대교

△ 신용산(4호선) 출구 △

**추가 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편집자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해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합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하였으며 ILO현장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존중된 법률과 실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미 예정되었고 여러차례 국제기구에 확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 협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ILO에 의해 제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소를 하는 바입니다.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호

2. 공익사업의 강제증재로 인한 쟁의권 박탈: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3호

3.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1조, 제26조 3항 및 4항, 제30조, 제34조 3항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부록 1. 관련 법률 규정(생략)  
2. 소견과 주장  
3. 사례: 법률 적용의 실례(생략)

**부록 2. 소견과 주장**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증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게 그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을 묻지 아니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 노동쟁의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 등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절차에 의하면 제소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단체로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전국적 조직, ILO에 대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가진 국제적 조직 또는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산하단체가 있는 국제조직이다.

이 절차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집행기구위원회’(Governing Body's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관여한다.

제소를 받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말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Recommendation)한다.

또 정부에 대하여 상황에 관해 계속 보고하도록 하거나 사건을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며, 예의적으로 사건을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집행기구에 권고하기도 한다.

‘사실조사 및 조정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집행기구가 회부 \*국제노동회의의 권고에 의해 집행기구가 회부 \*당사국 정부의 요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회부되는 4가지 방법으로만 사건이 제기된다. 이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하며 결정에 도달하면 특별보고서를 발행한다.

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 개입**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정관청의 지배, 개입을 허용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다. 그 전형적인 조항들은 행정관청의 노조 규약 변경, 보완명령권(제 16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권(제 21조),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권(제 26조 3,4항),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업무조사권(제 30조),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변경, 취소명령권(제 34조 3항)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ILO조약 제 87호 제 3조 “노동조합은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체 행정 및 활동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아니된다.”에 명백히 배치된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종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장, 민병천 동국대 총장,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의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수 1100여명이 참여하였다.

22일 오전 11시에 양군보 대표와 민교협 장임원 공동의장 등은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이기택 대표와 강창성·임복진 국방상임위 청원심사소위 위원,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만나 민주당 차원의 대책소위 마련 및 국무총리에 대한 공식 방문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기택 대표 등은 국회 예결위 때 예결위원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해결을 촉구 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법 개정 홍보 전노대**

2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업종별 노조 대표자 50여명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회 등의 노동법 개정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 어린이 성폭력, 사회적 관심 필요

19일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 열려

지난 19일 인켈아트홀에서 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 비디오 시사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강기원(변호사), 김강자(서울시경 민원 실장) 등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1부 토론회, 2부 비디오 시사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인 토론회에서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이라는 발제를 통해 “성폭력이 성인 여성에게 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성도착 증 환자보다는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성인 남성에 의해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주위의

잘아는 사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등의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 된다고 역설하였다. 또 여

양심수 부당징집 폐지와 사회복귀 서명운동  
여야 국회의원 131명, 교수 1100여명 넘어서

이기택 민주대표와 면담도 11월 1일부터 시작한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와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서명운동에 여야 의원 및 교수 등 92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당은 김동길 대표 등 3명과 무소속의 이종찬, 양순직 의원 등 7명도 참여하여 총 13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찬국 상지대 총

◆ 공판안내 ◆

□23일(화)

·서울대 성희롱사건, 1회, 10시, 민사지법 562호  
·조정의 일정, 군무이탈, 국보법, 10시, 대전32사단  
·김대영 일정, 군무이탈, 2시, 속행, 인천지법

□24일(수)

·송재희의 4인, 국보법, 2시, 3회, 서울지법 25부, 318호  
·정형근, 국보법, 2시, 1회, 서울지법 22부, 311호

□25일(목)

·케네스마클, 윤금이씨 살인, 4시, 결심, 서울고법 5부, 417호(대법정)

□26일(금)

·황주석의 6인,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23부, 311호  
·이재원 일정, 군무이탈, 10시, 선고, 천안지법

·김부겸, 국보법, 2시, 속행, 서울지법 10부, 318호  
·아키노 시바은, 산재인정 행정소송, 선고, 409호

◆ 알림 ◆

□고난받는 이웃을 기억하는 제5회 창작노래 공연

-가을 지나 겨울을 만난 사람들  
·주최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전화: 393-4662)  
·일시 : 23일(화) 7시  
·장소 : 감리교여선교회관 9층 대강당(한남동, 790-6471)  
□고대 극예술연구회 공연-‘대프콘’  
·내용 : 58일간 양심선언 군인·전경 농성과정 및 양심선언의 배경 등을 연극화  
·일시 : 23-24일 5시, 25-26일 3시·6시, 27일 2시·5시  
·장소 : 고대 대강당 6-101호  
□이동복 안기부장 특보의 파면·구속 촉구 안기부 항의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일시 : 23일(화) 오후 2-3시  
·장소 : 안기부 청사 앞(1시 30분 대한국장, 2시 청사앞)

##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행,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우리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율이 2.2%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성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21년 후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폭행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어린이 성폭행이란?

첫째는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행으로서, 말로 회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옷을 벗기는 일, 어린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성적접촉을 하는 성폭행으로서 가해자의 성기를 어린이의 신체 일부에 밀착시키거나 어린이의 입 또는 질,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 손가락, 이를질 등을 삽입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몸이나 성기를 만지는 일, 혹은 가해자의 몸이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세번째는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키거나 매춘행위를 시키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그중 하나는 어린이 성폭행이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위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들어온 어린이 성폭행 상담 사례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사례는 75.2%를 차지한다.

두번째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린이의 말은 대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서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세번째로는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정신병자나 흥취한 불량배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특히 부부생활을 멀쩡히 잘 하는 사람들이다.

네번째로는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밖에 나가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42%가 집(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거주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금방 상처가 눈에 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는 몸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성폭행은 평소 안면이 있던 어른이나, 어린이보다 크고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 어린이 성폭행을 예방하려면

우선, 아이들과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속을 입은 인형을 보여주면서, 또는 실제로 아이가 속옷을 입었을 때 “옷안의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옷안에 있는 부분을 만져달라고 해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면 분명하게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두번째는 가해자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싫어요, 비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알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라고 주의를 준다.

세번째, 아이에게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보호해줄 테니 부끄러워 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얘기하라”고 일러준다.

네번째, 낯선 사람의 차를 혼자 타니 말 것, 어디 갈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를 꼭 알릴 것, 낯선 사람이 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릴 것,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 것, 공공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에는 친구나 어른하고 함께 갈 것을 확실하게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가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위기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예방과 대처가 필요

어린이 성폭행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을 보면 일반범인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미성년자의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 의거,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단순강도죄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감안할 때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미한 처벌규정 외에 법운용에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다.

사회에서 피해자를 보는 따가운 눈초리와 친고죄라는 규정이 신고율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설령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다 해도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미친가지다. 피해자인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 가해자의 정액이나 체모, 지문 등의 물적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구속, 처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섭고 끔찍한 일’에 대해 몇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피해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므로 두번 세번 충격을 받는 상처가 되풀이된다.

또한 가해자의 위협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사춘기 이후에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를 알게 되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고 상담소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 현행법체계에서 가해자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가 모여 ‘성폭력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아니라,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진상조사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임용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세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회 일경에 재판도

세번째 '탈영범'이 된 김대영 일경과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 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회(26세) 일경의 재판이 23일 5시 50분과 2시에 각각 인천지법과 대전 32사단에서 열렸다.

김 일경에게는 '근무이탈죄'를 적용 3년이 구형되었고,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일경의 다음 공판에는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실상 알리러

400여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74년 독립을 추진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군사침으로 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스트 티모르 민족해방전선 외교부장이자 독립운동 지도자인 알카티리씨(44세)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27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2면 참조).

알카티리씨는 방한중에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와의 간담을 비롯, 민변 사무실과 전국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29일 오전 9시에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29일 오후 7시에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나의 조국 이스트 티모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지며, 30일 오후 7시에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다.

### 성희롱사건 첫 법정공방 시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공방이 23일 시작되었다(2면 참조). 서울대 우 아무개 조교(25세)가 신 아무개 교수(서울대 화학과)와 서울대 김종운 총장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3일 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월 2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다

### ◆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 ◆

####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

이스트 티모르 독립운동가 : 마리 알카티리

20여년동안 한 독립운동 지도자가 벌여온 조국 이스트 티모르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실체.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으면서 악소국가에게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를 그와 함께 토론한다.

·일시 : 93. 11.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립(민주당, 인권위원장)

-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 박노현(민교협, 방송통신대 교수)

- 이승우(경실련, 경원대 교수)

-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인권운동 사랑방 제7차 월례

세미나는 이번 특별세미나로 갈음합니다. 국제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합니다.

##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트 티모르는 인도네시아군도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서 크기는 제주도의 약 3배, 인구는 60-70만명이다. 티모르섬은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섬의 서쪽 웨스트 티모르는 1653년부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1949년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하면서 인도네시아령이 되었다.

이스트 티모르는 역시 17세기 중반부터 400년 이상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혁명으로 독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1975년부터 이스트 티모르에 군사진공을 시작, 1976년에 완전히 '병합'을 선언했다.

약소국인 이스트 티모르는 인도네시아군으로부터 온갖 만행을 당하면서도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사실상 이스트 티모르 민중을 대표하는 FRETILIN이 주도한 게릴라전을 포함하는 17년간의 민족해방운동과 효과적인 외교활동의 결과 국제사회에서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중요한 국제적 잇슈로 떠올랐다.

특히 1991년, 평화적 독립시위에 인도네시아군이 계획적으로 발포하여 2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산타크루즈사건은 영국 요크셔방송국의 목숨을 건 취재로 전 세계에 알려져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군사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만명이 사망하는 고난을 겪었으나(Amnesty International 보고) 안타깝게도 이스트 티모르 문제는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마리 빈 아무드 알카티리(Mari Bin Amude Alkatiri)씨

마리 빈 아무드 알카티리씨는 1949년 이스트 티모르 디리(Dili)에서 출생하여 현재 모잠비크를 본거지로 이스트 티모르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의 경력은,

- \*호레티린(Fretelin;이스트 티모르 독립을 위한 혁명전선) 창설자 중 한 사람이며 같은 단체 정치위원(1975-77)
- \*이스트 티모르 공화국 정무장관(1975-77)
- \*이스트 티모르 외무장관(1977-86)
- \*호레티린(Fretelin) 외교부장(1977-85, 1989-현재) 등을 지냄.

그의 활동내용은,

- \*1976년 2월, 이스트 티모르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토의에 참가
- \*1976-82년, 유엔총회 토의에 참가.
- \*1990년, 1991년,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
- \*1988년, ACP(African, Caribbean, PacificAssociables) - EEC총회 참가.
- \*기타 비동맹 외상회의 등 여러 국제회의 참석.
- \*'이스트 티모르를 위한 국제 법률가 강령'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의 멤버.

## 서울대 교수 성희롱사건 경과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기만 했던 성희롱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해자인 신교수(52세)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여자 조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거절할 경우 부당해임시켰음이 밝혀지고 있다.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우조교(25세)의 경우, 우조교가 발령을 받기 2-3개월 전부터 출근할 것을 요구하며 기기연수 등을 명분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뒤에서 껴안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과 집요한 테이트(등산과 여행을 함께 가자)를 강요했다.

그러나 우조교가 신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우조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업무량을 업무수행능력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소홀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였고, 우조교가 이에 굴하지 않고 참고 전자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해왔으며, 우조교는 임기만료일(93년 8월 31일)이 되기도 전에 부당해임되었다.

이에 우조교는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등에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과 부당해임에 대하여 단원과 진정서를 냈으나, 어떤 해답도 듣지 못했고, 마침내 서울대 교내에 학교교육의 실추된 도덕성과 수차례에 걸친 신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대자보를 통해 밝혔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회협의회 등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우조교의 대자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신교수는 우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우조교는 신교수와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10월 1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성폭력특별법제 정추진특별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등에 진정서 보내기, 성희롱 피해상담 창구 개설, 공개토론회, 홍보활동 등 각종 연대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움을 주는 언어, 몸짓, 표정, 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는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품평을 하는 것(잘빠졌다, 섹시하다 등)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음란하거나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의도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신체를 접촉하는 것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 \*직접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는 것 \*직장에 누드나 포르노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 등을 붙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 \*술자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테이트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11월 24일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 5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사업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효성중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회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기업주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해투는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주요 해고발생 사업장의 기업주를 직접 만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방문을 하던 중이었다.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 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를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 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보호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는 크게 보아 정보 및 기밀보안업무와 수사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 정보 및 기밀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안기부는 일체의 국외정보와 국내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권한을 가지고 있고(제1호·법문상 국내정보에 관하여는 보안정보 즉 대공 및 대정부전복 정보로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위 '대공', '대정부전복' 등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체의 국내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이

며, 그동안 안기부는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일체의 국내정보를 수집·작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를 관掌하게 되어 있으며(제2호),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총괄적 기획·조정권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제5호).

이에 따라 안기부는 국내에의 모든 정보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여 그 업무에 개입·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빙자하여 국내의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정치사찰, 정치공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수사권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시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조직·구성·활동내용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어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보기관이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비대화

안기부법에 의하면 안기부의 조직은 안기부장이 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제3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요한 조직을 일

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 국내정치에 있어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안기부가 각 지방에서도 지방행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안기부장은 위 파견요청규정에 의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들을 통하여 원소속기관에 안기부의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원소속기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신분상의 권리와 급여까지 보장할 의무를 지워버리(제9조) 파견공무원의 안기부에 대한 충성심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다.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역시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감시·견제·구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였다.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톡례인정

안기부법은 안기부를 예산회계법 제22조의 독립기관으로 취급하여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기부의 세출예산요구액에 대한 감액을 제한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내역없이 총액으로 하며, 안기부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0조).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해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에서 조차 그 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안기부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은 안기부가 가지고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안기부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의원) 주최로 운정동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 이사),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 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문제 \*장애인의무교육 실시 중심집행기관인 '판별위원회'의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 교수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안'이 77년에 제정한 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의무무상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며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증대와 2차적 장애를 예방과 발견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으로도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3세-5세의 의무교육대상자 1만3천여 명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2면 참조).

또 윤 교수는 모든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윤 교수의 주장과 달리 현재 교육대상자가 4만 5천여명에 달해 1년 예산이 5천억원이 소요되는 재정으로 국가재정상 무리가 있다며 상당기간 의무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서 민자당측 의원들은 주로 '조기의무무상교육'의 재원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반면, 민주당측 의원은 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무상교육'의 필요성과 '판별위원회'가 장애인의 학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공청회에서는 또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의 수자와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산출을 들려싸고 전술인들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제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

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국민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외무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면담 거절 세계 평화와 인권향상 의지 부족

외무부는 「전국연합 인권위」에서 초청한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의 외교부장인 마리 빈 아모드 알카티리씨와 면담을 거절한다고 회신해온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지난 18일 전국연합 인권위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면서 인권유린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일본의 침략으로 고난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정부가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인 마리 알카티리씨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음악제에서 윤혜경씨는 육중에 있는 남편 장의균씨가 지은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노래로 부르고, 손민아씨는 아버지 손병선씨가 보낸 편지를 낭독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 ◆ 알림 ◆

- 「노동인권소식」 제22호 발간/노동인권회관 발행
- 논단·신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참여형 노·사·정 협력 관계의 모색, 상담보고 등 수록(문의처 : 858-58378)
- 민변, 신일 국제연대 실무간사에 김은영씨
- 김은영씨(24세)는 올해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하였으며, 관악지역에서 4년동안 야학활동.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 윤점룡교수 진술내용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16년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된 셈이다. 첫째가 순회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하거나 단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안에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특수교육의 최우선 과제인 '의무교육'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물론 교육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어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나 98조에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장애아동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장애자를 진단·평가하고 취학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특수교육기관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학교 재수생'을 양산해온 진단·평가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모든 조항을 교육부령으로 둘러놓아 법안에서 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무수히 지적되어온 병폐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안은 제10조에서 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보조 가능성이 회복되었으며, 제14조에 개별화 교육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이념은 통합교육의 원리이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아동과 같은 교육장면에 배치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제정된 환경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심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 학교내에서 같은 교문을 사용하는 것도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원리는 법제정의 기본정신으로 전반적인 내용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안을 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6항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본 진술자는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또는 제정)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무교육과 판별위원회에 관해 중점적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유아원 교육은 반드시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유아원 과정에 취학하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교육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조기교육을 받은 아동의 30%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함(비손조기교육원, 1993)

\*자폐성 아동의 40~50%가 일반학급에 통합되고 혼련 가능 정신지체아는 교육가능 정신지체 수준으로 향상됨(Marzass & May, 1988)

2) 장애아동들이 조기 교육의 의무화로 능력이 향상되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함으로서 국가가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3) 국민으로서 교육의 평등성 확보

4) 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의무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하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체의 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

5) 장애아동이 장차 학령기에 접어들어 계속 특수학교와 같은 분리된 교육기관에 남아 있을 가능성성을 줄여줌으로써 통합교육의 조기 실현을 가능하게 함.

6) 모든 장애아동이 조기교육을 받음으로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거나 2차 장애의 발견을 도울 수 있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아동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국가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상 장애 유아들이 많지 않고 기존 시설(유치원, 종합복지관, 사설 조기교육원)을 잘만 활용하면 큰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교육 「판별위원회(또는 사정위원회)」는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판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를 지원하여 탈락하는 일이 없어져 장애아동의 완전취학이 가능해짐.

\*현재는 특수학교에서 가벼운 장애아동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허다함.

\*특수학교마다 특별기준이 모호하며 선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잡음이 있음.

2) 판별위원회의 공평한 평가에 의해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받을 수 있고, 통합교육 정신에 입각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영역이 다른 학생이 취학하고 있음.

\*일반학교에 통합되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아동도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가 있음.

3) 시설이 비교적 잘 된 국·공립 특수학교는 지원자가 몰리고 일부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켜 장애아동 입학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단, 사립학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4) 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지도까지 알선해 줌으로서 장애아동의 취업교육에 기여하고 산학협동체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음.

5)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도움을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로 성장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판별위원회가 각 시·군(구) 교육청내에 설치되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시·군(구)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 지도장학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그외 각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실질적인 센터구실을 하는 데 반해 정부안은 그 임무와 기능을 정하지 않아 장애아의 선발과정에서 잡음을 빚어왔다.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반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노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 환

경 개선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근시안적 태도가 산업재해를 더욱 부채질한다」며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마구 고용하는 것은 초파이 윤착취'라며 내·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학교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판별위원회의 지위, 권한, 기능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설사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모법에 판별위원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씨 27일 방한

## 기자간담회

29일(월) 오전 10시, 전국연합 사무실(747-4364/5)

## 강연회 "나의 조국 이스트 티모르"

29일(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동티모르와 알카티리씨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바랍니다. 자료집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알립 ◆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여성국 하루호프  
· 일시: 11월 28일(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장소: 황제호프(4호선 성심여대역 근처, 전화 926-7276)  
□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 신문광고 기금 마련 하루주점  
· 주최: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 일시: 11월 27일(토) 오후 2시30분~오후 11시  
· 장소: 한양대 학생회관내 조교식당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991.10.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으로서, 소의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경 위 공업사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프라스틱 원료를 투입하다가 원손이 떨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 제2 내지 5 수지 좌멸창 골절(분쇄 개방성)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체류자격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고용계약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

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피제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등이 낸 보험료로 피제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이로써 근로자 보호에 충실히 기함과 동시에 사업주 등이 부담할 배상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려는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제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내국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벌칙이 적용될 뿐 행위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업주가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증략).

3. 결론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6.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염규홍

# 인권하루소식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양심선언을 한 후 수배생 활을 받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이재원 일경은 지난 11월 26일 천안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통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고대성 일병과 이동익 이병의 항소심 1차공판이 시작된다. 1심에서 고일병은 구형 3년에 3년 실형 선고, 이이병은 5년 구형에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화정준씨(27세, 동아대 기계공학과 3년)를 사노맹 활동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공판 안내 ◆

□ 11월 30일(화)

· 김주옥, 징시법, 서울지법 317호, 11시 3회

· 이상숙,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14시 속행

□ 12월 3일

· 배명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서울지법 417호, 14시 5회

◆ 알림 ◆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사무실 이전

· 주소 : (110-551) 종로구 숭인1동 72-47 2층 201호

· 전화 : 766-8828 팩스 : 766-4979

(서울연합, 전국노운협도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1.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전 독립운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호주 북쪽으로 약 500 km 거리에 있다. 티모르섬에 서양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66년 포르투갈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

서였다. 그후 2세기 동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티모르섬의 통치권을 놓고

갈등해왔다. 1913년 양국은 티모르섬을 동서로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으나(1949년), 포르투갈은 일본으로부터 동티모르 통치권을 다시 뺏은 다음에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식민통치 시기 동안 티모르인들은 끈질 기계 저항했었다. 1880년대에 시작해서 1912년까지 이어진 최대의 독립운동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에서 지원군을 동원해서 이겨우 진압될 수 있었다. 이때 약 3천명의 티모르인이 살해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티모르섬을 점령했을 때, 티모르인들은 호주 군 장교들의 지휘 아래 반일투쟁을 전개했는데 이 당시 약 4만명의 티모르인들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포르투갈은 동티모르에 대해서 다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억압적인 통치방식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1960년 대에 주로 디레신학교 등에서 기톨릭계 교육을 받은 후 형성된 엘리트층은 1974년 포르투갈에서 파시즘이 끝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족주의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동티모르의 주요 정당은 모두 1974년 5월에 탄생하였다. 이중 규모가 가장 작은 티모르국민민주연합(APODETI)만이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하였다. 초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티모르민주연합당(UDT)은 포르투갈과의 연방제를 추진하였다.

티모르사회민주연합당(ASDT) 후신인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FRETILIN)은 다른 정당보다 급진적인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 전선의 강령은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종식, 독립의 자결권, 즉각적 참정권 보장과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전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질서유지를 위해 점진적인 독립화 과정을 계획하고 1975년 독립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과도정부'를 준비하였으며, 정강으로 '완전한 독립, 외국으로의 합병 거부, 식민잔재 청산'을 삼았다.

2.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후 독립운동 동티모르를 합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인도네시아는 세 정당을 정략적으로 이간시켜 독립의 방법과 내용을 들려싸

고 동맹을 맺은 지 4개월만에 UDT와 FRETILIN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다. 내전은 FRETILIN의 승리로 끝났지만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

##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자료집 요약)

'합법적' 합병의 기회가 사라지자 인도네시아는 포르투갈이 주저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호주의 지원하에 1975년 12월 7일 무력침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인도네시아 군대는 1978년 말까지 약 3년간의 전투를 치루었다. 이 과정에서 동티모르 전체 인구 60여만명 중에 1/3인 약 20만명이 살해되거나 굶어죽었고, 인도네시아 군대도 약 3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후 계엄령과 같은 공포정치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 사형당하였다.

한편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불법적인 동티모르 합병을 비난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은 당시 결의안에 따른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았다.

1991년 11월 12일 고메스 란겔 사망 14일제를 추도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다. 당일 새벽 6시 모타엘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들은 보안군의 방해로 차단되자 방향을 바꾸어 산타크루즈 묘지로 행진하였다.

도중에 시위대 일부와 보안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안군 두명이 칼에 찔려 숨졌다. 시위대는 행진을 계속하여 묘지에 도착,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시위대는 고메스 란겔의 묘에 헌화를 하였다. 숫자가 대폭 늘어나자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보안군 추가 병력이 도착하였다. 이때가 아침 8시경이었다. 보안군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긴장했고 일부는 묘지를 벗어나거리로 도피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였다. 앞에 서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최소 100명에서 200여명 정도가 현장에서 살해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대적 검거 선봉이 일어 수백명이 구속되었고, 이후 일부는 고문 살해당하였다.

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야만적 인권 탄압에 경악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압력이 갈수록 높아갔다. 궁지에 몰린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지 못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으로 끝났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력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람들은 정체된 동티모르 독립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1991년 10월 27일 방문 취소라는 충격적 소식이 알려졌다. 다음날 독립운동 활동가들이 피신처로 자주 이용하곤 했던 덜리시

의 산 안토니오 교회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주일 미사가 있었다. 그 일요일

# 인권하루소식

## 93년 12월

(제58호 - 제77호)